

들도 있다. 여기서 꼽은 2가지 쟁점은 현재 반세계화 운동을 고민함에 있어서 모든 운동들이 고려해야 할 지점을 간추려본 것이다. 반세계화 운동은 아직까지 열려져있는 운동이다. 이 운동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현 시기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비판이 없이는 어떤 운동도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각각의 운동들이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투쟁을 진정 자신의 과제로 받아 안고, 다른 운동들과의 연대를 확장하고 강화할 때 반세계화 운동의 앞날 또한 좀 더 분명해질 것이다.

반세계화 운동에서 한국 인권운동의 위치- 평가와 전망

허혜형(인권운동사랑방)

1. 들어가며 : 반세계화 운동에서 인권운동의 위치를 묻는 이유

인권운동에서 반세계화 운동의 의미

자본 세계화 전략이 가져다 준 민중들의 삶의 변화는, 잘 알고 있듯이, 가히 파괴적이다. 자본의 보다 자유로운 축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은 노동자에게 언제 실업자가 될지 모를 불안과 고통의 노동조건을 강요하고, 농민에게 그들의 생존을 보장해온 땅을 떠나도록 강제하고 있다. 물, 종자 등 인류의 공동자산은 소수 자본에 의해 독점되어 많은 대가를 치러야만 접근 가능하게 되었다. 자본이 공적영역에까지 기웃거리면서 교육과 의료서비스의 수준은 개인의 지불능력에 따라 결정되고, 아예 기본적인 수준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늘어간다. 이 모든 상황은 곧 사회권의 총체적인 후퇴를 의미한다.

자본 세계화 전략의 또 다른 특징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세계화는 곧 한 나라 경제가 세계경제에 깊숙이 편입되는 과정이다. 소수의 강국과 국제금융기구, 초국적 자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 세계경제 체제로의 편입은 국가단위의 경제, 사회, 문화영역의 정책 선택과 이행에서 국가의 자율적 권한 제약을 동반하고 있다. 이는 곧 민중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제, 개발, 사회, 문화정책들이 그들과 더욱 멀리 떨어진 곳에서 결정됨을 의미한다.

민중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간 각종 구조조정 정책들은 저 멀리 얼굴도 모르는 IMF나 세계은행의 관료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그 구조조정을 대가로 빌려온 돈은 거대기업과 소수관료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민중의 세금은 그들에게 돌아오는 대신 불어나는 외채 이자를 갚는 데 퍼부어지고 있다. 이 과정의 어떤 결정에도 민중의 참여는 배제되고, 오히려 이 상황을 되돌리려는 민중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데 국가폭력이 동원된다. 즉, 자본 세계화 전략의 파괴성은 분명 자유권과 민주주의에도 가해지는 것이다.

이렇듯 자본 세계화는 인권의 총체적이고 심각한 후퇴를 초래하고 있는 바, 인권운동은 현

시기 다양한 인권침해, 박탈 상황들을 자본 세계화의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자본 세계화를 심화시키는 다양한 시도들에 눈 감고서는 사회권 뿐 아니라 자유권 투쟁의 장기적인 전망과 활로를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극적인 한국 인권운동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비해 한국 인권운동진영은 반세계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못하다. 몇몇 인권단체들이 세계화 현안 관련 대책위원회들에 참가하고 있지만, 소극적인 동참이거나 인권단체로서 고유한 자기역할을 찾지 못한 채 집행단위에 결합해 있는 정도다. 그나마 독자적인 반세계화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부문은 해외한국기업 감시 활동. '인권운동 진영'의 반세계화 운동 흐름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는 남미와 동남아시아의 인권단체들이 공적자산의 사유화, 외채, 시장개방, 이주노동자, 강제철거, 식량문제, 공공의약품에 대한 지적 재산권 등 현 시기 다양한 사회권 문제를 자본의 세계화 맥락과 연결시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민중운동과의 연대, 인권운동의 국제적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나선 흐름과 대비된다. 유엔의 인권보장기구들 역시 무역 및 투자 자유화가 인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다국적 기업에 인권보호 책임을 지우기 위한 코드 제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 인권운동 진영은 이에 관한 논의조차 따라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반세계화 운동에서 한국 인권운동의 위치와 전망을 묻는 것은, 현 시기 인권상황을 자본 세계화의 맥락을 벗어나 진단할 수 없으며, 인권운동 진영이 이를 위한 준비를 더 이상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인권운동은 자본 세계화 시대에 요청받는 역할과 책임을 스스로 물어야 하며,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해 지금까지 반세계화 운동에서의 인권운동의 위치를 비판적으로 평가, 진단하고, 목표와 할 일을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번 워크샵이 그러한 작업의 물꼬를 트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 평가 : 2000년 아셈, 자본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인권포럼과 그 이후

(1) 2000년 '자본 세계화에 반대하는 인권포럼' 활동과 평가

2000년 서울에서 열린 아셈에 대항한 활동은 인권운동진영이 본격적으로 자본세계화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 행동의 틀을 갖추었던 최초의 시도였다. 전국 15개 인권단체

들이 아셈민간포럼 내 인권분과를 구성해, 1999년 7월부터 1여 년간 매월 한 차례 씩 회의를 가지며, 세계화와 인권에 관한 학습을 비롯해 인권운동 의제 개발을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당시 인권분과는 아셈민간포럼 13개 분과 중 가장 안정적인 논의 구조를 확보하고 있는 분과로 평가받기도 했다.

당시 인권단체들이 인권분과 참가의 목표로 삼은 것은 다음과 같다.

- 인권적 관점에서 신자유주의 비판과 대안 모색
- 신자유주의 하에서 전개되는 인권침해의 구조 분석
- 인권단체의 실질적인 국제연대 네트워크 구성(아시아 NGO 네트워크)
- 국내에서 사회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 마련
- 국내 인권단체간의 연대 증진

인권단체가 채택한 주요 인권의제

- 국제투기자본, 다국적 기업의 반인권적 착취 요소의 배제를 위한 대책
- 빈곤의 심화 원인에 대한 국제사회와 국내사회적 대응
- 발전권의 구체적인 실현과 개발에 대한 민중 개입의 원칙 설정
- 민주주의 강화와 국가폭력 근절
- 지역적 인권보장제도의 창출

당시 인권단체가 설정한 자본 세계화 관련 인권의제들은 현재에도 유효하며, 주제별로 당시에 진전된 논의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1여 년간의 인권분과 활동에서 인권단체들은 비록 대안과 구체적인 전략 논의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으나, 반세계화 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으로서 WTO와 국제금융기구 해체를 주장했고, 시애틀 투쟁과 같은 강력한 물리적 대중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아셈회의 직전, 인권단체들은 아셈민간포럼과의 근본적인 기조차이(아셈저지 vs 비판적 개입)와 재정의 정부 의존 문제(독립성 유지 vs 재정의 4분의1을 한국정부로부터 지원) 등 때문에 결국 아셈민간포럼에서 탈퇴하고, 애초 활동계획들의 상당부분을 수정, 축소하기에 이른다. 이후 인권단체들은 자본 세계화에 반대하는 인권포럼(아래 자세포)을 구성, 아셈반대 시위에서의 경찰 폭력 감시 활동을 벌이기도 했으나, 아셈 이후 지속적인 반세계화 운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자세포 활동의 한계와 그것이 지속적인 반세계화 운동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는 것은 현 시기 인권운동의 전망을 모색하는 데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

다음은 당시 자세포에 참가한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 인터뷰 내용이다.

Q 1. 당시 자세포는 WTO, 국제금융기구 해체를 주장했는데, 이러한 전략 선택에서 인권운동진영의 논의 내용과 과정이 궁금하다. 또, 해체 이후 대안적 무역, 경제체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가?

A 1. 돌아보면 당시 자세포의 활동에서 큰 방향 설정은 분명히 WTO 해체 방향이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잡고 있지 못했던 같다. 그렇지만, 당시 아셈 회의에서 사회적 의제를 다루도록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아셈을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강화를 위한 아시아-유럽 국가들의 틀로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었던 것 같다. 당시에 아셈민간포럼이 전자의 입장이었고, 우리는 후자의 방향을 선택했다. 아셈도 자본의 이익을 위한 국가들의 논의들이란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사회조항 하나 확보하기 위해 민간포럼이 정부들과 협의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하는 것은 반대했던 것이다. 반면 우리는 씨애틀 투쟁을 잇는 강력한 대중투쟁만이 아셈의 기조에 민간운동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이었던 것 같다. 따라서, 자세포 내에서 대안적 무역이나 대안 경제체제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없었다고 본다.

Q 2. 자세포 활동의 한계는 무엇이었으며, 현 시기 인권운동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A 2. 자세포는 아셈민간포럼을 막바지에 탈퇴한 인권단체들이 별도로 만든 한시적 연대체였다. 아셈 이후에는 지속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일단 민간운동의 거대한 중심으로부터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활동은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미약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주변적인 문제(당시 상황에서 아셈회의를 둘러싼 경찰의 방침은 매우 강경한 것이었다)라도 우리 독자적으로 접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책임주체들은 당시의 상황에서 매우 힘들게 준비를 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다만 아셈시위에서 인권감시 활동은 나름대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본다.

- 반세계화 운동에서 한국의 운동진영은 사실 수동적인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자세포와 그 이전의 인권단체의 활동도 수동적이었다. 이걸 바꾸어야 한다. 스스로를 주체로 세울 수 있느냐가 문제이며, 인권의 코드로 해석해내야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착안할 수 있는 것은 세계화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 후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인권은 저항의 언어로 재정의될 수 있고, 인권 개념을 급진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더 이상 우리의 권리를 빼앗길 수 없다는 것과 나아가 우리의 권리를

빼앗는 세력이 어떤 것들인가를 주장해낼 수 있다. 여기서 인권운동은 당연히 급진화된다. 그래서 자세포 때도 그렇지만 인권운동 진영의 독자적인 관점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

Q 3. 왜 아셈이후 자세포의 활동은 이어지지 못했다?

A 3. 자세포는 아셈 회의 이후 한, 두 차례 평가회의를 가졌고, 그 후로는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인권단체들의 상황에서는 아셈회의가 끝난 다음에 자세포를 인권단체들의 네트워크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했다. 자세포에 참여하였던 단체들은 대체로 느슨한 네트워크 조직으로 전환되기를 바랬다. 그것은 인권단체들은 자세포를 통해서 반세계화 운동에 대한 고민보다 더욱 크게 느꼈던 것이 바로 인권단체들간의 소통구조를 거기서 보았다는 것이다. 성실하게 진행되었던 인권분야 회의나 자세포의 회의에서 인권단체들은 비로소 전국적 단위의 연대가 가능하고, 그런 연대의 의미를 충분히 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의 합의였던 것 같다. 그러나 2000년말 국가인권위 설립 투쟁 이후에 자세포는 계속될 수 없었다. 아셈이란 구체적인 매개가 사라진 다음 그렇잖아도 바쁜 인권단체들이 아직은 덜 구체적인 반세계화 운동에 매달릴 수는 없었다. 결국 자세포는 인권단체들이 세계화란 화두를 고민하게 하는 성과를 남겼지만, 조직적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다른 방향에서 진행되었던 인권단체들의 연대기구화는 그 이후 논의조차 못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던 것 같다. 만약 자세포에서 논의되었던 것처럼 느슨한 형태의 정보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라도 만들어내었더라면 지금은 달라졌겠지 하는 아쉬움과 함께 다하지 못한 책임을 느낀다.

(2) 현 시기 반세계화 운동에서 인권운동의 위치

[별첨] (경제자유구역, WTO, 해외 진출 한국기업 감시)

3. 진단: 반세계화 운동에 인권운동이 소극적인 몇 가지 이유

분명, 한국의 인권운동진영을 자본 세계화를 거스르는 투쟁의 적극적인 운동주체로서 평가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 인권운동진영이 자본 세계화의 반인권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니다. 국제금융기구, 다국적기업, 국가의 세계화 전략이 인권의 어떤 후퇴를 초래하고 있는지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인권운동진영 사이에는 그 흐름을 돌려야 한다는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운동이 반세계화 운동에 소극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다음은 현 인권운동의 한계와 상황을 점검하는 토론을 위한 메모이다.

(1) 우선, 역량 부족의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인권운동의 역할과 책임으로 요청되어 온, 주로 자유권 영역의 인권침해 현안들이 인권단체들 앞에 쌓여있고, 쏟아지는 다급하고 구체적인 현안 속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체제에 대한 전망을 요구하는 반세계화 운동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레 뒷전으로 밀려나왔다.

(2) 또 인권운동진영이 반세계화 운동과 뗄 수 없는 근본적인 체제 전망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의 뜻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져본다. 개개인의 인권활동가들이 나름의 체제변혁에 대한 상을 가지고 운동하는 것은 논외로 하고, 인권운동진영 전체가 이 문제를 토론하고 공유하는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3) 몇몇 인권단체들이 세계화 관련 현안에 대응하고 있으나, 그 노력이 인권운동 전체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노동, 의료, 교육 등 이미 각 부문의 대중 운동이 인권을 무기로 반세계화 기치 아래 투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운동의 역할과 위치를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4) 현재 인권단체들이 대응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들-이주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인권 혹은 차별, 민주주의의 문제 등-을 자본 세계화 맥락에서 파악하고, 운동을 집중, 진전시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있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5) 반세계화 운동은 특히 보다 강고한 국제연대를 요구한다. 이때 국제연대는 인권의 보편적 실현에 대한 인식과 의지에 기초해야 하며, 그 지점에 인권운동의 개입과 책임이 요청된다. 그러나 한국 인권운동진영은 국제연대에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6)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반세계화 운동 역시 직접적인 피해자이며 약자인 대중(구조조정, 시장개방의 피해자, 노동자, 농민, 비정규직, 빈민, 개발지역 주민 등등)이 주체로 나설 때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 활동가 조직인 인권운동진영에게 이 대중들과 어떤 방식으로 연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는 않는가?

4. 전망: 자본에 의한 세계화, 인권운동에 요구되는 책임

앞서 언급했듯이, 자본 세계화의 맥락을 떠나서는 현재 인권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

고, 그것에 대항하지 않고서는 인권상황의 근본적인 진전이 요원하다. 자본에 의한 세계화를 멈춰 세우지 못한다면, 곳곳의 전선에서 벌이는 각각의 싸움으로 당장의 권리 진전을 이루어냈다고 해도, 그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를 불안한 모래성과 같다. 경제자유구역을 보라! (이러한 진단은 현재 인권운동이 벌이는 투쟁들이 의미 없다거나, 모두 반세계화 투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다만, 자본의 세계화 전략이 침범하고 삶의 영역이 그만큼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점을 강조하고자 함이다. 또한 현재 활동들을 자본 세계화의 맥락에서 재해석할 필요성과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고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만일, 인권운동이 반세계화 운동의 한 주체로서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자본에 의한 세계화를 대항하는 데 있어 인권운동에 요구되는 책임을 고려하는 가운데 모색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의 책임과 준비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다음은 전망에 관한 토론을 위한 간단한 페모이다.

(1) 인권은 약자의 인간다움을 위한 저항의 무기이며 쟁취할 목표이지만, 서구의 자유권 중심 인권체계는 이를 온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는 오히려 약자를 향한 총부리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왜곡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회권의 재정립과 그에 따른 인권체계 수정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자본 세계화가 초래하고 있는 인권의 총체적인 후퇴는 그 과제의 이행을 더욱 채촉하고 있다. 때문에 인권운동은 자유권과 사회권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위에 사회권의 보편성 확보를 위한 운동을 전개해야 하며, 그것은 반세계화 투쟁에서 인권운동에 주어진 과제이다.

(2) 반세계화 투쟁에서 인권운동이 풀어야 할 또 다른 과제는 대중(운동)과의 관계 설정에 관한 것이다. 세계화의 직접적인 피해자들(대중)과 어떤 방식으로 만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진전되어야 한다. 대중과의 직접적인 만남, 조직이 인권운동에 요청되는가? 아니면, 대중 운동이 인권을 자기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그들의 운동이 자기 대중의 문제에만 안주하지 않고 인권의 보편성에 기초해 진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에 인권운동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가?

(3) 무엇보다,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여성, 빈곤, 국가폭력 등 갖가지 인권현안들을 자본 세계화의 맥락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데, 비정규직 문제를 노동조건 개선이나 차별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을 넘어, 자본 세계화 맥락에서 파악함으로써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주목하고, 비정규직 권리 확보 투쟁을 반세계화 운동으로 진전시키는 데서 인권운동의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 세계화 맥락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안(경제자유구역 문제, WTO 시장개방 문제, 다국적 기업의 횡포 등등)에 대응하면서, 반세계화 운동에서 인권운동의 역할을 찾는 보다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여기서 자본 세계화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강요되는 수많은 조치들이 인권의 관점에서 다수 민중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진단, 폭로하는 일은 언제든지 요구되는 일이다.

(5) 앞서 언급했듯이, 반세계화 운동에서 국제연대는 빼놓을 수 없다. 전세계 인권운동진영 사이에서 세계화에 대항하기 위한 국제연대는 이미 시도되고 있다. 지난 6월 출범한 국제 사회권네트워크(escr-net.org)가 그것. 전세계 사회권운동을 결집시키기 위해 결성된 국제사회권 네트워크는 지난 6월 50개국 200여명의 인권활동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창립 총회의 주요 의제는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사회권 운동의 경험과 전략에 관한 것이었으며, '무역자유화에 대한 인권적 접근, 다국적기업의 활동과 인권침해 연관성, 발전과 인권, 외채가 사회권에 미치는 영향' 등의 세부 주제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또, 창립총회 이후 주로 동남아와 남미, 아프리카의 인권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반세계화 운동에서 인권단체의 역할, 목표, 전략, 경험 등에 관한 논의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의 이러한 활동들은 오프라인에서의 집단적 목소리와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창립총회에서 동아시아 인권단체들은 자본 세계화에 대항한 동아시아 인권운동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점을 서로 공유하기도 했다. 문제는 국내 인권단체들이 이러한 국제연대의 흐름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둘 것인가이다.

(6)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유권 뿐 아니라 사회권 영역에서도 자기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도록 견인하는 일은 아직까지 사회권운동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 역시 하나의 효과적인 전술로서 의미가 있다. 특히, 자본 세계화와 관련된 현안들은 대부분 광범위한 사회권 사안인데다 국가의 핵심적인 정책인 경우가 많아, 국가인권위는 정치적 부담으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왔으며, 여기에 인권운동진영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청된다. 그 개입은 인권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에서 출발할 수 있다.

- 무역·투자 자유화 정책의 반인권성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표명 혹은 정책권고.
- 국가가 무역, 투자 협정체결이나 관련 정책 입안 시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 마련.
-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활용.
- 자본 세계화 전략이 인권에 미친 영향에 대한 각국 사례 수집.
- 유엔 인권기구들의 관련 활동 모니터링, 발표.

별첨 1 : 경제자유구역과 인권운동

1. 경제자유구역법 저지 투쟁은 반세계화 투쟁이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자본의 최대 이윤 창출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제반 요소들을 제거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의 결정판이다.

이 법은 여성노동자들의 유급생리휴가 폐지, 단체행동권 제한 등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장애인의 의무고용 해지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일할 권리 박탈하고 있다. 또한 각종 규제조치 완화 내지는 폐지를 통해 환경파괴를 합법화시키고 있다. 교육 및 의료부문을 자본의 논리에 내맡김으로써 사회적 공공성을 파괴하고 있다.

이런 조치들은 국내외 자본들의 원활한 이윤 추구를 최우선으로 해 헌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이미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반 권리들을 후퇴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배제를 강화시키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问题是 지정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한 인권침해 역시 전국화 될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법이 담고 있는 반인권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자본의 세계화로 인한 인권침해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반대하는 싸움은 결국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투쟁이다.

2. 경제자유구역법 저지 투쟁

가. 경제자유구역대응인권단체 모임

- 지난 4월 중순께 국제민주연대(해외 한국기업 감시활동), 다산인권센터(경기도 경제자유구역지정저지 범경기도민대책위 참여), 인권운동사랑방(경제자유구역법폐기범대위 참여), 평화인권연대(WTO공대위 참여) 등 4개 인권단체가 모임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 인권단체모임은 경제자유구역법이 '인간보다는 이윤을'을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논리와 그에 따른 정책의 집결체임을 인식하면서 이 법의 반인권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며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활동을 벌였다.

- 기간의 활동

- 2003. 4 : 경제자유구역대응인권단체 모임
- 2003. 5. 29 : '경제자유구역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로 열린 대토론회에 참여(범대위 주최), 인권단체 모임은 '국제인권기준을 통해 본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발표
- 2003. 6. 19 : '경기도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경제자유구역법과 인권'을 내용으로 발표
- 2003. 7. 1 :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통과를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
- 2003. 8 : 경제자유구역대응인권단체모임의 향후 역할에 대한 논의, 결과로 제2회 인권활동가대회 소주제토론마당에서 '반세계화와 인권'을 주제로 한 사회권 워크샵을 준비하기로 합의
- 2003. 9 : 국가인권위원회 박경서 상임위원 면담
- 2003. 10 : 경제자유구역법의 국제인권규약 침해를 내용으로 한 보고서를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접수/ 국가인권위원회에 항의 공문 접수(범대위에서 접수한 진성서를 4개월 동안 처리하지 않다가 각하시켜 버린 것에 대한 항의 및 정책소위 직권으로 권고해 줄 것을 요구)

나.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저지 범경기도민대책위 활동

- 2003. 4 : 도대책위 발족 (노동, 농민, 시민운동진영, 인권단체 등 20개 단체 참여)
- 2003. 5 ~ 6 :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및 경기도 지정 저지 집회, 천막농성, 캠페인 진행
- 2003. 6. 19 : 정책토론회 개최
- 2003. 7. 14 : 경기개발연구원 주최 '경제자유구역지정 타당성 연구결과' 공청회 저지
- 2003. 10 :

- 경제자유구역지정 위한 연구용역비 10억원 추경예산 편성 관련 성명서 발표 및 도의회 경제투자위원장 면담, 방청 활동, 도청 앞에서 1인 시위 진행

- '경기도와 신자유주의'를 주제로 경기지역 9개 부문의 구체적인 현안과 의제를 중심으로 발표하고, 이후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두 차례의 정책 워크샵을 제안하고 진행

- 2004년 상반기 중에 지역에서의 반세계화 운동을 주제로 한 '경기사회포럼'을 제안

3. 경제자유구역투쟁에 대한 개괄적 평가

경제자유구역투쟁은 인권운동진영에게 자본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계기를 던져주었다. 4개 인권단체들이 함께 하면서 반세계화운동에 대한 전략부재 등의 한계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자세포 활동 이후 처음으로 자본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인권운동진영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진척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이었다.

여기에서는 기간의 활동에 대한 개괄적인 평가와 향후의 과제를 간략하게 집어보고, 이를 토대로 인권운동진영에서의 반세계화운동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한다.

1) 뒤늦은 대응 :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인권'에 대한 느슨한 긴장감

경제자유구역법 저지 투쟁은 정부의 빨빠른 움직임에 비해 상당히 뒤늦게 진행됐다. 지난 해 11월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만 해도 인권운동단체들은 큰 관심을 갖지 못했고,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도 거의 없었다. 올해 7월 경제자유구역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 4개 인권단체들이 모임을 갖은 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대응활동을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권운동진영에서 경제자유구역 대응이 뒤늦은 이유로는 무엇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한 느슨한 긴장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인권운동의 역사적 흐름(자유권 중심의 대응)과 사회권운동에 대한 인권운동진영의 전략이 아직 뚜렷하게 세워지지 않은 현상황이 주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2) 반세계화운동에서 인권운동진영의 전략 부재

인권운동진영은 경제자유구역 대응 활동을 하면서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되는 인권침해의 근거들을 인권의 관점으로 제시했다. 이런 관점은 경제자유구역 저지 투쟁을 함께 하는 단위들에게 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인권운동진영에게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인권침해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제공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대응팀의 활동은 적극적이지 못했다. 인권운동진영에서 조차 경제자유구역법의 반인권성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란 관점이 전체적으로 공유되지 못함으로써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던 측면이 컸다. 세 가지 원인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경제자유구역관련 대책위

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과 WTO 공대위 참여단체, 해외한국기업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4개의 인권단체들이 참여하면서 외연을 확대하지 못했다. 둘째, 자유권과 사회권이 상호불가분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법 하에서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크게 사회권 침해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한계 역시 한 끗을 했다. 셋째, 사회권운동에 대한 전략이 미약한 현 인권운동진영의 현실이다.

그 결과 인권단체대응팀의 활동은 국가인권위와 유엔사회권위원회에 의견서나 진정서 제출, 성명서 발표로 국한되는 소극적인 대응에 머물렀다. 이런 현 상황은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국민대책위나 경제자유구역지정저지 범경기도민대책위 등 연대활동에 참여하면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의 관점으로 경제자유구역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 이외의 활동에는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소극적이었다. 특히 지역 대책위의 주요 활동은 집회나 천막농성 등 대중 동원이 가능한 단위들의 투쟁(노동 중심의 투쟁)이었으며, 이 속에서 상근 활동가 중심의 인권운동단체들의 역할은 현실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다른 부문단위에서도 인권단체의 역할을 국가인권위에의 대응 등으로 상정해 놓았던 것 역시 현실이다.

국가인권위나 유엔사회권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활동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 투쟁에서 인권운동진영이 소극적인 대응에 머물렀던 것은 사회권운동, 반세계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분명하게 짜여 있지 못한 현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 과제 : 자본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인권운동의 전략과 다른 부문들과의 인식 확대 필요

경제자유구역투쟁은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의 기치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책위 등에 참여하는 단위들간에 자본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운동으로서의 인식은 크게 공유되지 못한 게 현실이다.

다행인 것은 인권단체대응팀의 경우 기간의 활동을 통해 공유했던 경험과 평가를 토대로 제2회 인권활동가대회 '반세계화운동에서의 한국인권운동의 위치' 소주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토론회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시대에서의 인권현안에 대해 인권운동진영이 긴장감을 갖고 천착하면서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하도록 추동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다른 긍정적인 흐름은 경기도대책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2004 경기사회포럼이다. 경기도 대책위는 지난 상반기의 경제자유구역저지투쟁이 반세계화투쟁이란 관점에서 참여단위들간의 소통이 부족했고, 공동의 전망을 세우지 못했다는 평가를 하면서 경기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흐름을 구체적인 의제별로 분석하고 공동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두 차례의 정책워크샵을 제안해 진행했다. 그 결과로 제안된 것이 경기사회포럼으로, 경기지역에서의 신자유주의 반대, 대안세계화운동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나가기 위한

마당이 될 것이다.

이런 흐름들은 부문간의 구체적인 의제들을 반세계화운동의 틀 안에서 어떻게 공동 대응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토대를 만들어 갈 것이다.

한가지 덧붙이면, 경제자유구역투쟁은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논리에 대항하는 운동이었다. 인권운동진영은 미약하게나마 경제성장률에 국한된 발전논리의 문제를 공론화시켰다. 현재의 경제발전논리는 이윤 추구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그 혜택은 소수에게(자본가, 중심국 등) 돌아갈 뿐이며, 경제발전논리로 대두되고 있는 개발과정에서 주민참여의 배제 등 민주주의의 원칙을 후퇴시키고 있다. 따라서 인권운동진영은 경제자유구역투쟁을 함께 하면서 경제발전논리에 대항하는 개념으로서 발전권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다.

이제 인권운동진영은 인권의 시각에서 경제발전논리에 대항하는 중심가치로서 발전권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켜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자본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1) 1986년 채택된 발전권에서는 발전의 정의를 "발전은 포괄적인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과정으로서, 발전과 그로부터 산출되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있어서의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참여의 기초 위에서 전 인구와 모든 개인들의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전권의 전제로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차별 없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선언 28조)의 존중 △탈식민화, 세계평화와 안보, 인류의 전체적 발전, 국제협력, 모든 형태의 차별 반대에 기초한 국제질서 △인민의 자결권(정치적 지위의 결정과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할 권리)과 천연자원과 부에 대한 영구주권에 대한 존중 및 주권에 대한 위협 금지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상호불가분성의 승인 △발전과정의 중심적 주체로서의 인간의 참여 증진 △인민과 개인의 발전에 이로운 조건을 창출할 국가의 의무 확인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의 수립

별첨 2 : WTO 5차 각료회의 저지투쟁과 인권운동의 과제

김지연(평화인권연대)

1. 정세

칸쿤 WTO 5차 각료회의가 결렬된 이후, 국내외 정부기관과 경제관련 연구소에서는 각료회의 결렬이 가져올 후과에 대한 분석이 여기저기서 제출되었다. 이미 WTO 5차 각료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번 각료회의는 순조롭지 못할것이며, 특별한 진전 없이 마무리 될 가능성 역시 충분히 감지 된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들이 쏟아졌었지만, 시장의 '자율성'을 논의할 수 있는 최강의 논의틀인 WTO가 실질적으로 좌초하게 되면서 신자유주의자들이 느끼기에 국내에 미치는 현실적 압박감은 더욱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광범위한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한 다자간 협상틀인 WTO가 무너지면서 이제 신자유주의자들은 양자간/ 지역간 협상 방식으로서의 접근을 재고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7일부터 열리는 APEC 정상회담에서는 지역내 자유무역화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며, 덧붙여 다자간 협상틀인 WTO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기 위한 아이디어들이 제출될 것이다. 지역간 FTA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도 중국과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FTA 체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이미 아시아의 대미 의존도를 상당부분 저하시키는데 일조한 중국은 역내 FTA 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무역활동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다자간 협상 역시 5차 각료회의 결렬로 인해 종결된 것은 아니다. 도하개발의제를 마무리짓기 위해, 올해말이나 내년초 사이 WTO는 특별 각료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각료회의 결렬의 원인 역시도 자본의 세계화의 흐름을 끊어낸 것이라기 보다는, 개도국들의 보호무역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발동된 것일 뿐이다. 특히 보수언론들은 이번 각료회의에서 보여진 개도국들의 태도는, 자국의 시장개방을 막는 것은 결국 근시안적인 사고로 인해 자유무역을 통한 장기적 경제개발의 가능성을 봉쇄해버린것과 다름없다는 논조를 통해 '자유무역 vs 보호무역'이라는 쟁점을 내세워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자본세계화의 문제점을 회석화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국내의 반세계화 관련 투쟁은 조금씩 안정화되어가고 있다. 3월부터 꾸준히 지속되어 왔던 한칠레 FTA 비준거부투쟁과 스크린쿼터 투쟁을 중심으로 한 한미BIT

반대 투쟁은 경제우선논리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시각을 일정 변화시켰다고 평가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칸쿤에서의 한국투쟁단의 활동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썩힌' 한국정부가 이미지 쇄신을 위해 앞으로 더욱 신자유주의의 칼날을 들이댈 것은 명백해 보인다. 이미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회생'을 위해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교육/의료등 서비스 분야의 문호를 개방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고, 지역특구 지정과 한·일 FTA, 한·미 BIT등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도 계속되고 있다.

2. 월별 활동일지

- 2002. 10월 : 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 관련 4대 입법 및 양허안 저지를 위한 공투본 결성
- 2003. 1월 : KoPA(FTA·WTO반대 국민행동)내 WTO DDA 대응 정책팀/서비스분야 대응팀 구성
2월 : "WTO 서비스협상저지를위한공동토론회" 진행
WTO DDA 협상 대응을 위한 Workshop 진행
3월 : KoPA 사업팀 구성 (국제연대/정책/교육선전)
WTO시장개방저지 교육총파업
- 4월 : 한칠레FTA 비준저지 국회앞 농성(전농)
WTO개방반대/경제자유구역저지 투쟁기획단 공동상황실 구성
일본, 일·한 FTA 반대 캠페인에 공동 성명
- 5월 : "WTO 5차 각료회의 대응 전략 Workshop" 진행
WTO 개방반대/경제자유구역 폐기 투쟁대회
의료시장개방저지 공대위 결성
2004 WSF 양자간·지역 FTA와 BIT에 대한 아시아 회의 제안
- 6월 : "STOP WTO" WTO 반대 교양자료집 발간 및 배포
OWINFS/멕시칸스페이스/부엔베니도스칸쿤 국제민중포럼기획단 가입(KoPA)
- 7월 : BIT 저지 공대위 결성
"왜 우리는 반WTO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가" Workshop 진행
WTO 반대 비공식각료회의 규탄집회 및 청와대 면담
한칠레 FTA 국회비준저지 농성(전농)
WTO시장개방 Workshop(의료시장개방공대위)
- 8월 : WTO 아시아지역 브리핑 & 전략회의 참가
- 9월 : 칸쿤 투쟁참가단 발족
5차 각료회의 규탄 범국민대회
칸쿤 현지 투쟁 진행

3. 칸쿤 투쟁 평가

이경해 동지의 자결로 인해 한국 투쟁단은 이번 5차 각료회의 저지투쟁의 선봉에서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그 주목과 '회의 결렬'이라는 성과를 얻은 기쁨은 전세계적으로 충분히 조직되지 못한 반세계화운동에 대한 실망에 견주어 봤을 때 그리 큰 가치를 둘 수는 없을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50000여명이 모일것이라는 예상을 무참히 깨고, 칸쿤 현지집회 일정에 모인 대오들은 5000에서 10000명이 고작이었다. 물론 멕시코 현지의 상황과 지역적 문제도 한 요인이었겠지만, 99년 시애틀 투쟁 이후 지속적으로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결과 치고는 초라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99년 이후 국내 반세계화 투쟁의 성과들을 깎아 내리는 것은 아니다. 전세계적인 국제연대운동의 현실태는 실망스러웠지만, 이번 한국투쟁단은 사상유래없는 투쟁대오를 조직하여 현지에서 열심히 투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것은, 반WTO 투쟁이 거대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의 동력에 기대어 '회의 결렬'이라는 물리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에만 치중했다는 생각이다. 자본의 세계화가 다양한 방향에서 민중들을 공격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등 대중조직의 집단적 투쟁으로만 운동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오해이다. 이번 5차 각료회의 저지투쟁에서도 드러나듯, TRIPs 협정이나 교육/의료 시장 개방등에 따른 각 부문별 투쟁들은 이미 특정 단위(노조 혹은 단체)의 입장이 아니라 각 사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투쟁하고자 하는 대오들을 조직하고 그 대안 형성을 위한 논의와 방식을 개발하면서 나름의 영역을 개척하려는 노력들을 보였다. 특히, '강한' 민중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동력'의 문제로 환원시켜 세부 쟁점들에 대한 공동의 합의 보다는 '회의 결렬'이라는 가시적 성과에만 집중하여 이번 투쟁을 승리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은 경계해야 할 지점이다.

4. 인권운동진영의 과제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었던 이번 칸쿤 각료회의에 한국은 가장 많은 투쟁대오를 파견했다. 그러나 그 200여명의 투쟁대오에 인권운동활동가들은 한명도 참가하지 못했다. 이는 반세계화운동에서의 인권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들을 통해서도 이미 짚어낸 바 있지만, 그간 인권운동 진영내에서의 반세계화 운동에 대한 논의와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한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반세계화 운동 뿐만 아니라 사회권운동에 대한 논의들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자본세계화가 가져올 폐해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만으로는 '연대기

구 동참'식의 단순 연대 이상의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개별 인권단체들이 각자 반세계화활동을 전개하는 연대기구에 함께하고 있으나 그 연대기구 내에서 소극적인 활동(국가인권위 진정 등)이상을 구성해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독자성 보다는 보편성을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인권운동은 교육/의료/지적재산권/환경등 이미 활발하게 반세계화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다른 분야의 운동들과 동일한 방식의 운동을 전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대중에 기반하지 않은 활동가 조직이며 보편적 의제를 가진 인권운동이 어떻게 새로운 방식과 투쟁의제를 발굴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자본의 세계화로 인해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는 모순에 대해 '집단적', '물리적'힘을 동원하기 위한 대중투쟁 보다는, 각 모순에 대항하여 투쟁하고 있는 단위들과의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이나 아이디어 교류, 소통등 실질적인 '대중동력'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별첨 3 : 해외한국기업 감시

최미경(국제민주연대)

1. 정세

세계화의 침병은 역시 다국적기업이다. 인권을 무시하며 이윤만을 추구하는 다국적기업에서 한국기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한국에 들어온 다국적기업이 한국민중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듯이 해외에 있는 한국기업 역시 현지 민중들의 인권과 생존을 위협하며 이윤을 쫓고 있다.

한국자본의 해외투자는 1980년대 급속히 증가하면서 1986~87년 즈음 빠르게 증가하여 1990년대 들어서는 한국자본의 해외진출이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을 초과하게 되었다. 올해 초 한국정부는, 한국기업의 해외투자가 2006년경 제조업의 60%를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발표했다. 현재 많은 한국중소기업들이 섬유, 의류, 신발, 전자 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동남아, 베트남, 중국, 중남미 지역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기업들도 자동차, 중공업 분야 등에서 해외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해외한국기업에서 발생하는 노동권을 포함한 인권문제로는 노조 불인정(노조 설립추진 노동자 해고), 강제 초과노동, 질낮은 음식제공, 폭언, 성희롱 등이 심각하다.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차별하며, 특히 수출자유지역에는 현지법을 남용하여 노동탄압을 일삼아 국제노동계의 비난을 수없이 받고 있다.

여기에도 전세계 자본의 이동이 더욱 자유로워지면서 노동자와 관련 단체들이 기업의 인권탄압에 항의하거나 노동권 준수를 요구할 경우, 해당기업은 공장폐쇄나 이전 등을 해 결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고용불안정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2~3년에는, 베트남, 중국, 중남미 등 한국기업이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이 생기고 한국자본의 해외 이동이 확대된 지 10여년이 지나면서, 해외현지 공장을 폐쇄 또는 이전하는 과정에서 임금 불지급, 갑작스런 공장폐쇄, 야반도주 등의 새로운 문제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1970년대 노동집약적인 산업현장에서 저임금, 장시간노동, 모멸적인 인권대우에 저항하며 싸웠듯이 현재 한국기업에 고용된 해외노동자들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투쟁하고 있다.

지난 몇 년 사이 국내 및 국제여론의 지적과 현지화를 고민하는 기업자체의 노력에 의해 이전보다 노동탄압의 사례가 많이 누그러진 양상이다. 그러나 최근 해외의 요구와 올해 현지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여전히 해외한국기업에서 인권문제는 심각하며 다국적기업이 있는 한 이 문제는 계속될 것일 뿐 아니라 감시해야하는 물리적인 지역 역시 확대될 것이다.

2. 일자

- 1996. 해외한국기업 감시 운동 시작(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시절)
- ~1999. 국내 캠페인, 워크샵, 모금활동, 해당기업과 대사관에 항의서한 등 감시활동(멕시코 한영기업 등)
해외현지 조사: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베트남 등
NGO's Codes of Conduct(기업행동강령 또는 기업윤리강령) 제작
- 2001 멕시코 극동기업 현지 조사
- 2002 아동노동·노동자 착취 월드컵 후원 초국적기업반대캠페인(국내외 13개단체)
- 2003.2 워크샵 '해외한국기업감시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 2003 '해외한국기업 인권백서' 발간 준비, 현지조사: 베트남 국경, 인도네시아, 필리핀

3. 평가 및 과제

(1) 한국에서 해외한국기업감시운동의 위치

이 활동을 시작한지 7년여가 되었다. 초기에는 “국내(노동)문제도 당장 시급한데 이런 걸 왜하나?” “이런 운동도 하는구나, 나(우리)와는 멀지 않나”라는 등의 반응이었다. 여러 노조 및 단체들과 연대활동도 하였으나 꾸준히 이어지지 못하였다. 세계(사)속에서 한국은 피해받은 역사라고만 생각하지 우리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세계화에서, 다국적기업에서 한국은 우리 보다 못사는 민중들에게 가해자임을 인식해야 한다. “아시아의 제국주의, 한국”

(2) 주체의 문제

한국의 노동사회인권단체들은 지금까지 투자기업에서 발생해온 문제에 대해 관심은 있었지만 실제적인 대안마련과 연대행동을 조직사업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일부 시민단체들과 노동조합에서 1996년 NGO's Codes of Conduct를 제작한 것은 해외투자기업감시활동의 의의라고 볼 수 있으나 이후 기업행동강령을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사업들을 개발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다행히 작년의 월드컵 캠페인, 올해 2월의 워크샵 등에서 여러 단체들의 관심이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활동의 성과 및 한국사회단체에서도 국제(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월 워크샵에서는 사회단체들에 네트워크를 제안하기로 하였는데 워크샵을 주관한 국제민주연대가 네트워크 제안을 아직 못하고 있다. 국제민주연대 역시 인권단체로 이제 자리잡고 있는만큼 인권단체 내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을 제기하고 대응 연대체를 제안해야 한다.

또한 다른 분야 못지않게 해외한국기업감시 역시 장기간의 안목을 갖고 활동가를 키워내야 한다. 국제연대는 물리적인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3) 국제연대 인식 제고

고용안정화가 심각하게 위기를 맞은 한국노동상황에서 해외기업에서의 노동인권문제를 노동자(조합)들이 중심사업으로 끌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자본의 이동은 현실이다. 오히려 노동조합이 전략적으로 본국과 해외현지 공장의 노동자들의 연대를 위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문제기업들이 한국 내에서는 아예 본사가 없거나 있더라도 작은 규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한국내 인권단체 및 국내 노총(산하 조직) 등의 연대투쟁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의 많은 인권사회단체들이 국제연대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기업문제는 해외현지에서 매번 (해결)요구가 올라오는 문제이다. 따라서 국제연대 활동에서 반드시 접하게 되며 피해갈수 없는 문제이다.

(4) 해외한국기업의 노동자와 현지 관련단체들은 한국 노동자 및 인권단체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실제 한국 단체가 개입할 경우 개별사태해결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해외한국기업이 위낙 여러 곳에, 많은 수의 기업들이 나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일일이 대처하는데는 역부족이다. 한달에도 2,3건씩 문제기업정보가 들어온다. 문제 발생시 현지로 달려가는 것이 가장 빠른 사태해결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재정이 허락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

사례에 대한 대응과 함께 한국정부 및 기업에 대한 압력 역시 중요한 활동방식이다.

(5) 해외한국기업과 아시아 민주주의

아시아에서 마지막 군사정권으로 남아 있는 베트남의 경우, 현대, 포철, 한국전력공사, 엘지, 삼성 등 웬만한 한국대기업들이 그곳에 나가있다. 베트남군사정권의 인권탄압은 매우 광범위하고 노동 실태 역시 심각하다. 경제적 이윤이 군사정권유지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군사정권과 연계되지 않고는 베트남에서 기업활동이 불가능하다. 베트남민중들은 노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큰 차이가 없는 정도의 열악한 노동상황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해외기업들의 철수를 통해 군사정권에 대한 상징적인 압력과 실제로 군사정권유지 통로가 없어지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다. 베트남에서 한국기업문제는 앞으로 더 조사가 필요하지만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6) 해외한국기업에서 한국으로 이주노동자를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국내 이주노동자 운동과도 연대지점을 찾을 수 있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외자본의 감시활동은 조사연구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단체들은 다국적기업에서 발생하는 인권실상을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한 공동사업을 모색해야 한다.

(가능한 활동: 개별사태 대응, 노동자 및 국내외 관련단체들의 연대, ILO 조항 준수 감시, OECD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감시 및 관할 국내 부서(산업자원부) 감시, 정부와 기업에 경제사회적권리 강화촉구, 현지 조사 연구 등)

사례발표 : 반세계화 운동으로서 글리벡 투쟁의 성과와 과제

김동숙(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센터)

I. 세계화와 건강권

자본의 세계화는 생산보다 투기를 중심으로, 무제한적이고 무절제한 이윤 추구를 특징으로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를 가로막는 관세, 비관세 등 모든 걸림돌을 모조리 부수며 잠식해오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가 건강권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전은 다양하다. '건강할 수 있는 권리'란 문자 그대로 아픈 사람은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지만, 신자유주의적 시각으로 볼 때 의료를 포함한 사회보장체계는 개인을 나태하게 만들고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따라서 축소되어야 할 비생산적 영역이다. 자본의 세계화는 보건의료부문도 다른 경제부문과 다름없이 이윤을 쫓는 일반적인 통상분야로 인식하면서 이윤축적의 또 다른 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보건의료를 움직이는 힘은 '시장'이며, 시장은 단순히 공적 의료체계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해체하는 주요한 힘으로 작용해,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적시장을 형성시킨다.

초국적 자본은 공공부문의 고용감소, 민영화를 주장해 공공서비스를 축소시키고 보건의료와 사회보장에서 경쟁을 도입해 시장화, 상품화할 것을 주장하는 것만 아니라, 심지어 질병에 대해 민중을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구조를 생성하고 있다. 노동강도 강화, 정리해고, 하청, 아웃소싱을 통해 노동자를 노동에서 소외시키고, 금융시장의 유연화를 요구함으로써 자본을 해외로 유출시켜, 노동자를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있으며, 또한 세계화로 인한 빠른 유통으로 운전경로, 항구 등 운송체계를 따라 에이즈, SARS 등 감염성 질환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

삶의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서 충족되어야 할 '건강권'을 지키려는 각국 민중의 투쟁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물의 사유화 저지로부터, 의료시장의 구조조정프로그램 도입저지, 에이즈 치료접근성 투쟁까지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 중 특히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투쟁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와르 공화국과 같은 아프리카 국가, 브라질, 태국,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주요한 운동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으며, 지

적재산권협정(TRIPS)가 건강에 우선할 수 없다는 도하선언문의 원칙은 각국 민중의 투쟁의 소중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2002년 뜨거웠던 글리벡 투쟁 또한 환자들이 치료할 수 있는 권리, 약을 먹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투쟁이라 불리울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글리벡 투쟁은 초국적 제약기업 노바티스의 독점에 반대하여 의약품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환자와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싸운 투쟁이거나와, 특허를 기반으로 전세계 의약품 시장을 장악하려는 초국적 자본과 이를 엄호하는 강대국의 질서재편에 대항하는 반세계화 운동이라는 합의를 부여할 수 있다. 반세계화 운동과 인권운동간의 전략적 연관성, 접근성을 고민하는데 글리벡 투쟁의 경험에 기여하길 바라며, 이 글에서는 반세계화 운동의 관점에서 어떠한 전략으로 싸웠는지 살펴보자 한다.

II.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글리벡 투쟁

1. 무엇이 문제인가

글리벡 싸움은 2001년 6월 세계에서 3번째로 남한에 글리벡이 도입되었다. 문제는 초기 노바티스는 글리벡 약값을 한 캡슐당 25,005원으로 제시(하루 4-10알 복용시 약값은 월 최소 300만원)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더욱이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단계 만성기-가속기-급성기 중 만성기가 보험에서 제외되게 되면서, 약값결정과정과 보험적용문제에서 첨예하게 싸움이 촉발되었다.

글리벡의 약값이 비싼 이유는 한국에서 글리벡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 노바티스 하나밖에 없다는 독점성에 기인한다. 20년간의 특허¹⁾는 배타적 독점기간을 제약자본에게 보장하면서, 약값은 환자가 약을 먹을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 제약자본의 이익을 최대로 할 수 있는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최대이윤을 얻을 수 있는 가격이란, 선진국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1) WTO 하의 여타 협정과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 협정도 새로운 투자대상을 찾아 자본의 영역을 만들었다 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은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지적재산권 협정들을 포괄하여 영토의 한계를 넘어 무제한적인 독점적 권리(특허)를 향유하고자 하는 초국적 자본과 제국주의 국가들의 시도이다. 특허에 의해 보장되는 배타적/독점적 권리의 기한은 20년이고, 미생물과 동식물까지 특허는 보장된다. 또한 이전에는 각국마다 따로 출원해야 했던 특허를 회원국에 대해 동시적으로 보장하고 분쟁해결을 WTO분쟁조정위원회에 맡김으로써 획일적인 특허제도의 세계적 성립에 이바지하였다. 지적재산권 협정(TRIPS)로 인해, 특허는 '이윤을 뽑아낼 방법을 개발한 사람'에게만 돌아간다.

가장 높은 가격이다. 제약자본의 입장에서, 의약품 총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북미+유럽+일본은 그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시장일 수 밖에 없다. 그 외의 국가의 질병과 접근성 여부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다. 최빈국, 개발도상국의 민중들은 시장과 이윤을 쫓아 투자하는 제약자본특허로 인해 약은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지구상에 약이 없고²⁾, 설사 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AIDS치료제와 같이 특허 때문에 너무 비싸서 약을 사먹을 수 없게 된다³⁾. 제약자본이 높은 이윤을 획득하면서도 제3세계 민중들을 수탈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은 바로 특허로, 특허는 제3세계로의 기술 이전 및 확산을 봉쇄하고 초국적 제약자본의 독점성을 보호, 강화시켜주는 핵심적 기전이자, 공적으로 연구·개발된 성과물을 자본이 독점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매개고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남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글리벡 가격이 비싸게 책정된 것은 남한만은 아닐 것이건만, 왜 유독 남한에서 글리벡에 대한 투쟁이 발생했는가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글리벡이 비쌀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남한 의료보장의 취약성에서 기인한다. OECD 국가 중 남한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비중은 최고인, 43%이다. 가장 민간중심이라고 하는 미국보다 더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노바티스가 고수하려고 했던, 전세계 약가통일 원칙은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들 국가에서는 건강보험에 대부분의 질환을 포함하기 때문에, 글리벡의 약값이 비싸다는 것만으로 환자부담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없었고, 환자들이 결집할 근거가 되지 못했다.

또한 더욱 재미있는 부분은 글리벡 약값이 결정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왜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정부는 글리벡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고, 선진 7개국 평균가격에 기반해 약값을 결정한다는 비상식적인 약가결정방식은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 이는 글리벡과 같이 혁신적인 신약에 대해서는 선진 7개국의 약값을 평균해서, 약값을 추산한다는 국내법에 근거한 탓이다. 사실 약값결정방식 뿐만 아니라, 국내 의약품정책에 대해서는 미국과 제약자본의 끊임없는 외압이 작용하고 있다. 한덕수 외통부 장관이 OECD에 가입하면서 혁신적인 신약은 선진 7개국의 약값을 평균해서 결정한다고 서명한 이후, 2000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7개국의 약값을 평균하는 기묘한 방식을 띠고 있다. 2003년 1월 약값이 결정되는 6개월 전 개최된 건정심 회의에서 애초 제시했던 17,862원을 고집할 수 없었던 이유는 선

2) 우간다, 수단에서 일하는 MSF(국경없는의사회) 봉사자들은 아프리카 수면병 약물을 구할 수 없어 격분하고 있다. 치료제 DFMO는 이윤이 충분치 않아 생산이 중단되었다. 1999년 한해 동안만 1천4백 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열대성 감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의 연구/개발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3) AIDS와 관련된 약값은 92-98년도 사이에 평균 434%나 상승했으며 미국이나 유럽의 에이즈환자 중 85%가 AZT를 복용하고 있는 반면, 백 만명으로 추정되는 태국의 보균자 중 이 약을 사먹을 수 있는 사람은 채 1%도 안 된다. (TRIPs Council 대응팀, 특허에 의한 살인 자료집, 2001)

진 7개국의 약값을 평균해서 결정한다는 남한의 신약결정 구조방식 때문이다. 사실 신약에 대해서는 거의 제약자본이 제출하는대로 약값이 결정된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신약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품을 제거할 기전을 갖고 있지 못하고, 심지어 글리벡과 같이 초국적 제약자본이 약값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기전조차 없다. 외려 이태복 장관의 경질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미무역대표부, 미상공회의소,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 있는 초국적 제약자본에 정부가 휘둘리는 상황마저 연출되고 있다.

남한에서 약값을 결정하는 과정은 약제전문위의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이다. 글리벡의 경우 초기 약제전문위에서 제시한 가격을 노바티스가 거부하면서, 가격결정은 지난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정부가 제시한 가격을 노바티스가 거부한 상태에서 약값은 결정되지 않고, 1년간 글리벡은 제대로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아 환자들은 약을 먹을 수 없었고,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환자들의 애절한 요구와 공대위 투쟁에도 불구하고, 노바티스가 약값을 거부한 1년동안 정부는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무능력한 정부에 대한 규탄에도 정부는 국가를 초과하는 초국적 자본에 대해 무역압력 등의 경제논리로 회피하기만 했다.

2. 어떤 전략으로 싸웠는가

2-1. 특허에 대항한 무기, 강제실시

노바티스가 여러 차례 환자기금을 제시하면서도(25,000원으로 결정한다면, 10%내지 30%를 노바티스가 지원하겠다는 약속과 조건을 걸어왔었다), 약값을 내리지 않았던 이유는 한국시장이 크기 때문은 절대 아니다. 노바티스는 전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세계 약가통일'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은 최대한의 이윤을 얻기 위해 시장철수를 무기로, 정부와 환자를 위협하기까지 하고 있으며, 두 번째 전략으로 노바티스는 남한뿐만 아니라,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노바티스 외에 다른 초국적 제약자본이 추구하고 있는 전략이다. 초국적 제약자본은 환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할지언정, 선진국에서의 약값을 깨지 않기 위해 약가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특히 의약품을 다른 가격으로 판매할 시에 병행수입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더싼 약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진국에서 먼저 결정된 약값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서의 약값을 선진국 수준의 약값으로 결정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초국적 자본이 독점형성을 위해 특허를 무기로 자신들의 전략을 취한데 대해, 민중진영과 환자들은 특허의 독점성을 문제시했다. 특허가 초국적 제약자본에게 시장독점권을 부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고 있지만,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서도 특허에 의한 독점질서에 대한 파열구가 존재한다. 강제실시는 특허권자만 생산할 수 있던 약을 특허권자 외에 다른

한 청구자에게 똑같은 약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이 소극적 허용이 특허의약품을 환자에게 안정적이고싼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의약품에 대한 독점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빈국과 개발도상국의 민중과 선진국이라도 빈곤층의 경우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박탈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윤을 최고의 산업 18.5%의 제약자본에게는 구매력 있는 대상만이 그들의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강하게 표명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지만, 건강보험 등을 통해 약값을 보험에서 보장하도록 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보험료를 제약회사의 이윤으로 고스란히 내주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우리의 주장은 대중의 이해지반을 넓힐 수 있었다.

강제실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근거는 의약품이라고 하는 속성상 공공적 필요도가 높기 때문에, 공공에 의해 개발된 것을 사적으로 향유한다는 점이었다. 개발과정에서 글리벡은 오래온암센터의 지원을 받았고, 환자들의 탄원으로 회귀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임상시험비용의 절반은 세금감면받았다는 점은 글리벡 강제실시와 약값인하의 주요한 근거였다. 이런 근거하에 2001년 글리벡 투쟁이 시작되면서 의약품 공공성 투쟁은 먼 나라만의 일이 아닌 자국내의 일로 인지되었고 제약자본의 특허권보호가 환자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특허에 대해 긴급사태와 공공의 비상업적 실시 경우에 발동할 수 있는 강제실시⁴⁾는 그 자체만으로 약값을 떨어뜨리고 약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는 효과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을 위시한 초국적 제약자본의 대변자들은 강제실시의 규정을 최소화시키려 하고 있고⁵⁾, 제 3세계에서 강제실시가 발동은 물론이고, 조항조차 삭제되도록 제국주의 국가들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 비록 강대국들의 힘에 밀려 강제실시를 발동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제 3세계 국가들은 TRIPs조항에서 강제실시에 대한 규정과 범위를 최대한 넓히려 악간힘을 쓰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강제실시를 법령에 규정한 것만으로 39개의 초국적 자본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저지시키려 했으며(남아공 시장은 전체 제약시장의

4) TRIPs협정, 그리고 WTO는 상업적인 이익에 상당히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반면, 의약품 특허의 세계화에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시키는데 유용한 조항 또한 가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는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ing: CL)이다.

TRIPs 규정 31조에서 강제실시의 발동요건은 적절한 계약조건하에 특허권자로부터 승인을 얻으려는 노력이 실패해야 한다는 것이다. 승인을 얻으려는 노력이 필요 없는 경우는 국가 긴급사태나, 특허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경우 혹은 단순히 공공목적의 비상업적 목적을 위해 발동할 수 있다. 강제실시권을 허여하게 한 상황이 사라지는 즉시 강제실시권을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TRIPs 내의 긴급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제한적이고 부적절하게 정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비상업적 목적은 특허를 파괴하고자 하는 나라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근거이다.

5) 강제실시에 대한 조항은 캐나다는 1993년 2월 폐지, 영국은 1977년 폐지되었으며 프랑스와 독일은 여전히 존재한다

1%에 불과하다) 브라질에서는 2001년 보건성이 AIDS약물(Nelfinavir, Efavirenz)의 강제실시권을 행사하겠다는 발표만으로도, 호프만-라 로슈사(Hoffman-La Roche)는 비라셉트(Nelfinavir)의 가격을 40%이상 떨어뜨렸다. 초국적 제약자본은 약값이 반으로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강제실시만은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정부는 온갖 회유와 압력을 통해 강제실시만은 저지시키고 있다. 약값을 내리면서까지 강제실시를 저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강제실시는 일국적 수준에서 약값을 떨어뜨려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초국적 제약자본은 남아공의 개정법, 그리고 각 국에서 활동하는 강제실시의 합의⁶⁾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2-2. 반세계화에 대항한 건강권 확보투쟁의 주체, 환자

기간 세계화에 반대하여 건강권을 수호하려는 투쟁이 국내에서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1년 TRIPS 이사회에서 강제실시 논의를 둘러싼 싸움에 개입하고, 외국의 의약품 접근권 투쟁에 연대하는 등 국제적으로 자본의 세계화에 반대하여 의약품의 접근권 확보, 건강권 확보 투쟁을 벌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세계화가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항해야 하는 건강권 수호투쟁에 대한 사회화는 매우 부족했다. 외국의 투쟁을 소개하고, 국제적으로 연대하는 것만으로는 세계화에 반대하여 건강권을 수호하려는 투쟁을 남한내에서 조직화하는 것은 어려웠다. 글리벡 투쟁은 남한내에서 세계화가 건강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글리벡 투쟁이 의미있는 것은, 남한내 의약품 접근권을 중심으로 한 첫 투쟁이라는 것 외에 환자들이 그 주체로 나섰다는 점이다. 2001년 초기, 약의 조기도입을 위한 요구에서, 약값 문제에 대한 지적으로부터, 특허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환자모임에 연대한 민중진영과 사회단체의 노력으로 환자들은 의약품의 공공성과 건강권 확보의 투쟁주체로 각성되었고, 투쟁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었다. 또한 부족했던 부분이지만, 글리벡 투쟁이 불쌍한 환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특허와 의약품의 접근성의 문제임을 남한 운동진영내에 선전선동하고 사회화시켰다.

6) 만약 남아공의 개정법이 원래 목적대로 시행되고 인정된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을 입법화하려고 할 것이라는 점을 제약회사는 잘 알 것이다. 특히, 제약기업들은 개정법이 그들이 가장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는 미국 시장과 선진국 시장(합쳐서 82%)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우려하였다. 개도국과 최빈국에서 값싼 약을 살 수 있게 된다면, 미국의 소비자들도 낮은 가격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일부 보건 활동가들은 천정부지의 의약품 가격을 대폭 인하할 것을 이미 요구하고 있다. 제약자본은, 지금은 AIDS만 문제로 삼지만 이 문제가 조만간 심장병이나, 암과 같은 다른 질병에 대한 의약품 논쟁으로 확산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남아공의 '개정법'을 가장 가슴아프게 생각한 것은 바로 미국 의약품연구 및 제약협회(PhRMA; 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였다.

2-3. 국제연대

남한 운동진영의 연대와 환자들과 글리벡 공대위의 투쟁만으로, 일국을 초과하는 초국적 제약자본, 노바티스가 움직일 리는 만무하다. 자본의 세계화 흐름-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강화, 국내 정책에의 다국적 제약자본의 영향 속에서 글리벡 투쟁은 국제적인 이슈로 제기하고자 노력하였다. 세계사회포럼에서 남한의 글리벡 투쟁을 소개하였고, 국제적인 저항을 조직하려고 시도했다. 그 성과로 국제운동 단위들 또한 중진국 남한의 의약품 접근권 투쟁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남한의 투쟁에 주목을 해왔다.

대부분의 반세계화 운동이 그러하듯, 의약품의 접근권 투쟁은 단순히 일국의 투쟁이 아닌, 국제적인 연대투쟁이 필요한 투쟁이다. 97년 남아공에 대한 39개 제약회사의 소송이 남아공 민중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도, 2000년 브라질 특허법에 대해 미국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민중의 저항으로 취하한 것도 모두 국제적인 연대의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의 도하에서 'TRIPS 협정' 중 어떠한 것도 각 WTO 회원국들이 각국의 공중 보건과 관련된 조치들을 채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선언문이 80개국이 넘는 국가들의 강력한 연대의 결과물로 채택된 것도, 신자유주의의 최첨병인 세계무역기구(WTO)조차도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비롯한 공공의 건강 보호가 제약회사의 특허권 보호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승리 또한 각국 민중의 투쟁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국제운동단위들이 남한에 주목하는 것은 브라질, 남한, 태국, 남아프리카와 같이 국내 제조 능력이 있는 나라들이 특허를 파괴한다면, 이는 엄청난 도미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땀이 한번 무너짐으로써 홍수가 시작되게 된다. 못사는 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져왔던 특허와 건강권 침해문제는 중진국 남한에서 뜨거운 감자로 발생하면서, 다시금 특허와 강제실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할 수 있다.

III. 글리벡 투쟁의 성과와 한계

1. 성과

1-1. 초국적 제약자본의 독점에 대항한 투쟁

글리벡 투쟁은 남한 내에서 특허를 이용한 초국적 제약자본의 독점과 그들의 과잉이윤과 해게모니 장악에 대해 반대하고, 의약품의 공공재적 성격에 대해 문제제기한 첫 투쟁이란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의약품 특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는 이유는 공적으로

로 연구 개발된 의약품을 제약자본의 사적소유물로 전화시키는 핵심에 지적재산권-특허-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는 제약자본에게는 높은 이윤을 가져다 주는 반면, 제3세계 민중들에게는 건강권과 생명권 박탈을 가져다 주고 있다. 특허는 제 3세계로의 기술 이전 및 확산을 봉쇄하고 초국적 제약자본의 독점성을 보호, 강화시켜주는 핵심적 기전이며, 공적으로 연구·개발된 성과물을 자본이 독점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매개 고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약품의 특허가 갖는 본질적 속성과 정치적 함의는 의약품의 상품적 성격을 더욱 가속화시키며 공공성을 탈각, 의약품의 사적소유를 더욱 강화하는 기전이라는 것을 남한사회 내 폭로하고 사회화시켰다.

1-2. 반세계화 투쟁과 건강권 수호투쟁에서의 접점

앞서 지적되었지만, 글리벡 투쟁은 의약품의 특허를 이용해 초국적 자본이 시장을 독점하는 것에 대한 반대투쟁이란 의미도 있지만, 이는 초국적 자본을 위시한 강대국의 지적재산권 협정(TRIPS)와 세계무역기구(WTO) 자본의 구미에 맞는 무역질서 재편에 대항하는 싸움이라는 함의를 갖는다.

2. 한계

2-1. 근본적 문제의 미해결

글리벡 투쟁이 갖는 의미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글리벡 투쟁이 얻어낸 성과물은 무엇인가라는 반문을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약값은 노바티스가 재신청한대로 결정되었고(23,045원), 강제실시는 불허되었다⁷⁾. 일말의 약값 인하도 없었고,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조차 해결되지 않은 채로, 정부는 보험적용범위 확대와 본인부담 10% 인하, 그리고 노바티스의 10%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를 봉인하려 하였다. 건강보험재정에서 초국적 자본의 탐욕을 충족시켜줄 뿐, 결국 환자들의 호주머니로 비용은 전가된 것이다. 특허가 갖는 위력

7) 지적재산권협정(TRIPS) 내에 보장되어 있는 제도인 강제실시는 지구 남반구에서 한번도 시행된 바 없다. 미국의 경우 반트러스트법 하에서 1941년 8월부터 1959년 1월까지 특허권이 제한되었던 107개의 판결이 있었으며 '말그대로 수 만개의 특허'가 100개가 넘는 소송에서 강제적으로 양도되었다. 한 소송사건에서는 무려 약 1500개의 특허가 강제적으로 양도되었다. 그러나 선진국과 초국적 제약자본은 다른 개발도상국에서 민중의 건강권을 증진시키고자 강제실시를 하는 경우는 철저한 무역보복과 소송분쟁으로 일관하여 강제실시 시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태국, 브라질의 경험에서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방해와 협박으로 인해 강제실시는 TRIPS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중진국이하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 한번도 강제실시가 이루어진 바 없다. 다만 작년 브라질의 Nelfinavir에 대한 강제실시 발표와 올해 짐바브웨의 6개월간의 제한적인 강제실시가 있었을 뿐이다.

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정부는 의료보장 내로 문제를 포괄시키면서, 국민의 비용분담 정책을 통해 문제의 핵심을 비켜갔다.

2-2. 주체의 의지

어떤 투쟁이건 투쟁주체의 지속적인 의지가 관건이다. 세계화에 반대하는 건강권 수호 투쟁을 끌고나가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현실적 요구도는 절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의할 부분이었다. 강제실시가 불허되었고, 약값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환자들은 보험적용확대에 대해 일정정도 동의를 표명했고, 더 이상의 약값인하 투쟁과 강제실시 투쟁으로 진행되는 것을 한계지웠다. 당장 환자 자신에게 이로운 상황을 연출하는 자본에 대항하여 반세계화 투쟁을 자기 과제로 받아안는 대중주체의 형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IV. 건강권 수호를 위한 반세계화 투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리벡 강제실시투쟁은 '공공의 이익'을 제약자본과 선진국이 원하는 대로 비정상적이고 긴급한 상황에서나 필요한 것으로 제한하는 것을 저지하고, 민중의 보편적 권리-건강권, 생명권-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투쟁이다. 지적재산권협정(TRIPS) 이후 강제실시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고, 제 3세계에서 강제실시 발동은 물론이고, 조항조차 삭제하도록 강대국들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 브라질과 남아공에서 강제실시 소송은 초국적 제약자본과 강대국이 강제실시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저지하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다. 한 나라에서의 강제실시는 점차 다른 나라로 확산, 전세계로 확산될 여지가 있다. 단순히 제너릭을 등장시켜, 약값을 떨어뜨리고 접근성을 높이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초국적 제약자본의 특허에 맞서서, 나아가 강대국과 자본의 세계화 흐름에 맞서는 싸움을 전개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공공의 영역을 파괴하고, 시장으로 대체하는 자본의 세계화 흐름에 맞서서 공중보건, 공공의 영역을 사수하는 싸움이다. 강제실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전략에 맞서는 반세계화 투쟁의 실천적 전략으로서, 초국적 자본과 이를 비호하는 자본의 세계화와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다.

의약품은 역사적으로 질병치료에 대한 필수재로서 사회적으로 필요성을 요구받고 있다. 의약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호, 건강권 유지에 필수적이다. 각 나라가 국가차원에서 의약산업에 공적자금을 투자하고, 의약품을 관리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즉, 의약품은 공공의 필요에 의해 공공의 기여로 개발된 것이다. 따라서 제약자본에게 독식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나아가 공공의 노력에

의해 개발된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제약자본의 사적소유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의약품은 공적으로 전유되어 필요한 민중에게 경제적, 지리적, 연령별 차별없이 충분히 분배되어야한다.

사회보호법과 격리, 수용, 감금의 역사

김정하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대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회보호법이라는 말을 잘 들여다 보자.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사회보호법에는 다분히 사회통제를 목적으로 기존사회가 요구하는 '인간형'에 부합하지 않으면 동등한 사회참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이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뤘어도, 정신장애로 인해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여도 사회방위, 유지를 위해서는 격리, 수용, 감금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당연시되어지고, 국가는 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해, 방위하기 위해 프로크루테스의 침대¹⁾처럼 사람을 재단한다. 그 프로크루테스의 침대가 바로 사회보호법인 것이다.

I. 사회보호법과 보호감호

사회보호법은 크게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이 세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의 사회보호법과 관련된 논의는 보호감호폐지가 그 중심논의였다. 아마도 보호감호처분을 받는 당사자의 호소가 가장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보호감호와 관련해서는 이미 발표된 많은 언론보도와 자료들을 통해 많이 알고 있으리라 여겨지므로 최근에 발표한 인권활동가선언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자.

첫째, 보호감호제도는 본질적으로 반인권적 제도이다

1) 프로크루스테스란 이름은 '늘리는 자'란 뜻이었다. 그는 포세이돈의 아들이며, 원래의 이름은 폴리페몬으로 다마스테스(조련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프로크루스테스는 앗티카 지방에 살았다. 그는 자기 영지를 지나가는 나그네를 잡아 쇠침대 위에 누이고 결박했다. 그러고는 여행자의 몸이 침대보다 짧으면 몸을 잡아 늘여 침대 길이에 맞추고, 반대로 몸이 침대보다 길면 긴 만큼 잘라버렸다.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제도는 사회복귀를 촉진한다는 명분 아래 이른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유로 형사책임이 종료된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 인신을 구속하고 시설에 감금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 이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폭력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심대하게 해치는 반인권적 행위이며 동시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헌법의 이념에 반한다.

또한 이미 처벌받은 행위를 사유로 거듭처벌하고 그 내용 역시 행형과 다름이 없는 보호감호제도는 명백한 이중형벌이다.

둘째, 사회보호법은 반인권적 발상에서 제정된 법이다.

보호감호의 근거법인 '사회보호법'은 삼청교육을 합법화하기 위한 전두환의 작품이었다. 1980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불법적인 권력찬탈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고 정권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삼청교육대를 만들었으며 이의 만료시한이 다가오면서 교육생들의 사회복귀를 차단하기 위해 국가보위입법회이라는 혁명위원회를 통해 이 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는 피보호감호자들의 재사회화에 역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반 정반대로 그들의 사회적 격리와 억압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역시 그 활동보고서를 통해 "보호감호제를 폐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세째, 보호감호의 집행은 반인권적이며 이미 위험수위를 넘은 지 오래다

정부와 보호감호 존치론자들은 보호감호가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인 데다가 처우 역시 교도소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실상을 왜곡하는 것에 불과하다. 감호를 집행하는 시설도, 사람도, 그리고 감호의 내용을 규정을 규정하는 법도 모두 행형의 내용과 동일하다. 이러한 생활 하에서 피보호감호자들은 출소 후 밥벌이에 도움이 못되는 노동에 8시간 이상을 바치고도 하루 평균 1900원의 돈을 손

에 절 뿐이다. 그렇게 번 돈으로 비누, 치약, 속옷도 사야하고 아프기라도 하면 치료도 받아야한다. 결국 길고 긴 사회와의 격리 끝에 빈손으로 맞게 되는 것은 '재범의 예방'이라는 목적과는 달리 '사회적응력의 제거'이며, 장기 구금을 통한 가족의 해체이다.

덧붙여 보호감호제도의 본질은 결코 이 사회와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지 않다. 지난 23년 간 보호감호제도의 적용을 받은 사람들의 대다수는 '빈곤범죄'라 불리는 절도범이었다. 이러한 범죄의 원인과 책임은 상당 부분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 격차 등의 사회정책적 노력을 통해 해결돼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감호제도는 개인에게 이 모든 범죄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보호감호제도는 시작부터 불평등하고 비틀린 사회에 태어나 언제든 '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가능성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대다수의 빈곤층 국민들을 위협하기 위한 장치이며, 또한 '범죄자'라 낙인찍힌 이들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제도에 지나지 않다.

우리는 사회보호법이 반인권적 제도임을 확신하며, 또한 이 법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인권과 정의, 그리고 역사의 이름으로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촉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보호법 폐지에 즉각 나서라!

II. 사회보호법과 치료감호

여기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내용은 바로 '치료감호'와 관련된 내용이다. 치료감호란 용어 자체가 생소할 수 있겠는데, 사회보호법의 표현을 빌리자면 '죄를 범한 자로서 치료가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라 되어있다. 즉 형법 10조에 의하면 심실상실과 미약의 경우 '벌하지 아니한다, 형을 경감한다'고 되어있어 정신장애인의 범죄의 경우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거나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은 형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호법으로 '감호하면서 치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 이제 치료감호를 중심으로 한 행정제도의 인권침해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자.

그러나, 그러기전에 잠깐 짚을 것이 있다. 아마 여기서 논의할 '정신질환, 정신장애, 그리고 범죄와의 개연성'등은 우리의 편견에 의해 왜곡될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잔소리같지만 정

신장애에 대한 잠깐의 이야기부터 해야겠다.

1. 편견과 만나다.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고 했다. 내안의 편견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인종에 대한 편견, 아니면 지역이나 학벌에 대한 편견이 있을까? 혹은 조선일보 보는 사람들은 다 보수적이다거나, 친미적인 사람은 상종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들일까?

어쨌든 나는 비장애인으면서,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해왔다. 적어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을 것 같은 나조차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만나기도 한다. 당혹스럽다. 그러나 솔직해져본다. 분명 편견이 존재하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정신장애,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다. 어릴때 흔히 '성병환자'라며 피해다녔던 사람, 서울역에서 흔히 볼수 있는... 솔직히 고백하건데 나또한 한때 피해(?) 다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에 깔고 치료감호제도를 다시 봤으면 하는 욕심에 잔소리아닌 잔소리를 시작하려 한다.

1)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렉터박사²⁾의 환상, 그리고 대구지하철화재참사 보도기사까지

한때 미국을 비롯한 세계각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영화가 있다. 바로 '양들의 침묵'이다. 나도 그 영화를 보기 위해 비디오를 빌렸던 기억이 난다. 유명했기에 아류작, 유사품도 나왔던 영화, 한편으로 '렉터박사'라는 신화에나 등장할법한 인물을 실존인물인듯 둔갑시켜버린 영화...

내가 이 영화에 주목하는 것은 등장하는 하니발 렉터박사 때문이다. 정신과의사면서 범죄 심리전문가, 그러면서 정신질환자이고 9명이나 죽인 살인자, 그래서 감옥에 있다가 결국 탈출하게 되고 사람들은 정신질환자 렉터가 자신을 죽일까봐 공포에 떨게 된다는 그 영화의 스토리가 내가 주목하는 이유이다. 이 영화 한편으로 인해 정신질환에 대한 확실한 공포를, 정신질환자와 극악무도한 범죄사이의 등식(=)을 우리 생각 언저리에 심어준 확실한 영화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렉터박사와 같은 정신질환과 그로 인한 그러한 범죄는 없다. 그러나 보통 정신질환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는 '사회적인 위험군'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같은 공간안에서 생활할 수 없고 그래서 격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정신장애인에 대한 시설수용과 같은 사회적 격리가 용인되기까지 정신장애에 대한 악성 이미지를 만드는 매스미디어가 한몫 단

2) 영화 '양들의 침묵'에 등장하는 주인공, 정신과의사이면서 범죄심리전문가.

단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화와 같은 매스미디어가 미치는 결정적 영향력은 사람들의 뇌리에 어마어마한 효과를 남긴다. 그러나 지어낸 허구라 생각할수도 있는 영화가 그러한 실수(?)를 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라도, 더한 것은 방송국의 뉴스보도, 신문보도다. 화성연쇄살인사건에서 개구리소년, 그리고 대구지하철 참사까지 우리의 보도태도는 정신장애인을 범죄화하는데 일조했다.

어느 신문사설에서는 '전국 각지에 돌아다니는 정신장애인이 500만 정도나 된다는데 정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렇게 예비범법자들이 돌아다니는데 국가의 관리소홀로 범죄가 늘어가는 것이 아니냐며 정신질환자 모두를 사회로부터 격리수용해야한다고 핏대를 올렸다. 물론 대구지하철화재참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은데 대한 분노감이 깔려있었겠지만 그래서 모든 정신질환자들이 예비범죄자들이라고, 그래서 미리미리 격리하라고 외친다면 억측이 아니겠는가?

▲ 2002년 11월 3일 K모방송국 9시 뉴스에서는 "개구리소년 보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앵커 : 대구 개구리소년들의 사인이 타살로 결론남에 따라서 이제는 과연 누가...

기자 : 법의학팀의 분석대로라면 ... 정신이상자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00대 교수 : (중략)...따라서 정신이상자나 성격이상자가...

기자 : 경찰은 이에 따라 실종 당시 대구 일대의 정신이상자와 엽총, 공기총 불법소지자를 중심으로 재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 2003년 2월 18일 K모방송국 9시뉴스에서는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보도"에서 수없이 "정신장애인 소행"임을 외쳐댔고 다음과 같은 말도 서슴치 않고 내뱉었다.

기자 : 뚜렷한 동기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봐서 어떤 자신의 신병을 기관 화풀이성 방화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김씨가 이전부터 정신병력을 앓은 기록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 또 오늘 범죄도 우발적으로 자신의 신병을 비판해서 뭐 막말로 나죽고 모두 한꺼번에 죽자는 그런 심정으로...

앵커 : (끼어들며)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98년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소외된 영혼들'이 방영되었었는데, 그 내용중 이런 조사를 한적이 있다. 비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두고 첫인상 및 친숙감을 측정했었는데, 첫인상은 차이가 없다가, 의사를 정신장애인이라고, 정신장애인을 비장애인이라고 속인 정보를 주었을때, 친숙감에서는 비장애인으로 소개된(실제 정신장애인)사람들에게 더 우호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것은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현상은 정신장애로 인한 병의 결과로 생긴 그들의 기이한 외모나 특이한 행동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소위 '낙인현상', 혹은 '표식붙이기'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즉,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정보'에 의해 비장애인들은 정신장애에 대한 선입관 혹은 편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³⁾

2) 중증정신장애인 = 중범죄자?

이러한 매스미디어의 효과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우리는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먼저 정신장애에 대한 정의, 현실, 치료와 이후방향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먼저 풀어보자.

정신장애는 크게 정신장애(mental disorder, Illness), 정신건강(mental health), 정신적 문제(psychological problem)로 구분하며, 정신장애에 관한 법률적 규정은 크게 장애인복지법과 정신보건법⁴⁾에 정의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그동안 비의료기관에서 정신장애인을 감금, 수용하고 비의료적행위를 일삼아왔던 정신보건의 현실을 극복하고 정신장애인 치료를 지역화하고, 비의료기관에서의 수용을 법으로 금지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강제입원을 법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과 실제로는 병원, 요양소에서 장기수용화되고 있는 측면에서는 재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모든 정신질환의 평생유병율은 30.9%로서, 남자 38.4%, 여자 23.1%로 남자가 여자보다 1.7배 더 높은 유병율을 보였다. 이중에 정신질환으로 진단될경우는 약 15~16%이며, 또한 평생유병율이 결혼상태(29.5%)인 집단보다 별거 : 이혼 · 사별한 집단(39.7%)에서 높았고, 도시 지역(30.3%)에 비하여 농촌지역(32.5%)에서 다소 높았으며, 나이별로는 40대(33.3%)에서 가장 높았다.⁵⁾

우리는 통상 정신질환자들이 더 많은 범죄와 폭력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정신질환자들이 일반인구에 비해 살인, 폭력 등의 범죄행위가 더 많은가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

3) 이영문, '치료감호와 인권 - 정신장애인의 범죄와 치료를 중심으로'내부자료중.

4) 정신보건법 제3조 (정의)의 1.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 인격장애 ·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5) 2001년 보건복지부 연구로 본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전국 규모로는 사실상 처음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하여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CIDI한국어 번역판(K-CIDI, Korean Composite International Diagnostic Interview)을 조사도구로 사용한 국제적으로도 공신력 있는 결과이다.

지의 국내외 연구결과는 일반인구와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적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조성남, 1992). 폭력행사가 병 증상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반사회적 인격 등의 인격장애인을 제외하면 정신병자들이 특별히 더 폭력을 행사한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대구지하철 보도에서 알 듯이 정신장애인을 예비범죄자로 낙인화하는 언론의 보도와 사회인식은 중증정신질환과 중범죄를 등식화해 버린다.

현대의 정신질환과 관련한 핵심용어들은 '탈중앙화, 의료의 공영화(사유화 및 관료주의와 구분), 지역화(소규모화), 단기입원, 비수용화(비요양원), 지역사회 거주 중심의 인권적 치료, 탈병원화, 종합병원의 외래치료 중심'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러한 '중증정신질환=중범죄'의 등식은 낙인으로만 끝나지 않고 사회방위의 목적으로 정신장애인을 수용하자는 목소리로 모아지고, 결국 현대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방향과 상관없이 수용과 감금의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성명(statements)은 정의와 인간애의 이상적인 원칙만이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소홀히 하는 사회로부터 정신장애인을 보호하는 실제적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20세기 들어 이와 같은 정신장애인의 권리에 도움을 준 세 가지 미국 정신의학계의 사례로는 첫째 치료받을 권리(right to treatment)를 인정한 *Wyatt v. Stickey* 사례, 둘째는 자유로움에 대한 권리(right to liberty)로 *Donaldson v. O'Connor* 사례, 셋째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right to refuse treatment)를 인정한 *Rogers v. Okin*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정신장애인의 장기 수용화만으로도 자기 존중감은 소홀히 될 수 있고 의존성, 절망감 등은 치료의 목적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문 1996).

1981년에 이미 모든 입원 정신병원을 없애버린 이탈리아의 경우는 정신질환의 치료를 외래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모든 병상을 없앴다. 또한 새로운 입원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지역사회중심의 치료기관에만 예산지원을 했다. 그렇지만 나는 한번도 이탈리아에서 정신장애인들의 극악한 범죄로 인해 사회방위가 필요하다는 말은 못 들어봤다. 이러한 개혁을 성공시킨 이탈리아의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자유가 곧 치료다."

2. 사회보호법과 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인

1) 사례를 통해보는 치료감호제도

여기까지 우리는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해 잠깐 딴 이야기를 해봤다. 이제 본론

으로 돌아와서 사회보호법과 치료감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먼저 치료감호소에서 생활했거나 가족이거나 전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짚어보자.

※ 이 사례는 그동안 직접상담, 전화, 메일, 편지등을 통해 접수된 내용을 축약한 것입니다.

○ 홍00씨의 사례

- ① 영치금이나 가족면회가 없으면 장기수용 된다. 죄질에 상관없이 영치금과 가족유무, 그리고 가족들의 의사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다. 심사는 10분정도 진행하는데 웃으면서 '네, 네'하면서 잘듣는척 하면 나갈수 있지만, 가족들이 반대하거나 가족들이 없으면 나가기 힘들다.
- ② 생활하면서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강금하거나, 십자형으로 묶어두고 몇 달이고 둔다. 내가 실제로 나오기전에 십자형으로 묶인 사람의 뒷수발을 다했다.
- ③ 자기의사대로 되지 않으면 뒤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음, 평소 고혈압이었는데 뇌출혈로 실려 나가는 것을 목격함. 임산부에게 약을 처방함.
- ④ 여자감호자에게 남자교도관들이 "몸매 죽인다"등, 덩치가 큰 여자 감호자에게 남자와 "레슬링을 해봐라"등의 표현을 하고, 옷을 안입고 다니는 감호자에게 보호라는 명목으로 굳이 몸을 더듬는다. 문화행사의 명목으로 남자들 앞에서 "캉캉춤"(남자들앞에서 속옷이 보이도록 치마를 들추게 했다)추게 하고 싶다고 해도 접수에 반영한다면서 억지 하게 함.
- ⑤ 중세에 따라 치료약이 달라야 함에도 모든 감호자들에게 약처방이 비슷하다. 치료는 투약밖에 없으며, 다른 활동은 형식적으로 진행된다.

○ 이00씨의 사례

- ① 치료감호형을 받고 자살을 시도했다. 일반교도소에 가면 형이 줄기라도 해서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희망인데 이곳에서는 형이 줄지 않아 절망감 느끼게 한다. 치료를 평균으로 감호소내 수감기간의 형편성이 없다. (살인도 6년후 출소, 단순절도인데 15년이 지나도 가족이 반대해 출소하지 못한 것을 옆에서 지켜봤다.)
- ② 단순절도, 단순폭력도 평균 2년은 있어야 나갈수 있다. 입소후 1년이 지나야 심사대상이 되기때문이다.
- ③ 감호소내의 생활에 있어서 주로 마약사범인 방장이 권력을 휘두른다. 방장의 명령에 따

라야 한다.

- ④ 의사와 다투게 되면 속칭 대포주사를 놓음(한번 맞으면 밥도 안먹고 계속 잠만잔다), 약을 먹고 나면 시력감퇴, 소변 잘 안나옴, 손발떨림, 변비, 안절부절하게 되는 등 부작용 많았다. (차량절도죄로 40대초반에 들어가 60세가 되어 약부작용으로 손과 입술이 가만히 있어도 떨리면서 퇴소하는 것 봤다.)
- ⑤ 한번 심사에서 떨어지면 무조건 6개월기다려야 하는데 이것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다.

○ 김00씨의 사례

- ① 2001년 가을, 특3병동에서 죽어서 온 사람에게 중환자실에서 상부에 보고할 문건의 사진을 첨부하기 위해 죽은 사람에게 산소호흡기와 심전도기를 착용하여 사진을 찍어감.
- ② 정신과 치료외의 문제에 대해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 자신은 허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③ 자신의 치료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아무 답변을 들을 수 없었음
- ④ 건의사항은 올라가지도 않거나와 건의할 수도 없는 분위기이다. 만약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출소평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 있을 때는 무조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 면회온 가족 김00씨

- ① 단순절도(플라스틱 물병등)를 했는데 구치소에서 3개월, 치료감호소에서 1년 6개월째 복역중, 충동조절장애라 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별문제 없었다. 정말 단순절도인데도 벌써 2년이 다되도록 복역중인 것이 억울하다.
- ② 총명한 사람이었는데 면회를 가면 침을 흘리고, 눈이 흐려서 말도 못 알아듣는다. 약을 어떻게 먹이는지 걱정된다. 치료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하니 공개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소속으로부터 들었다.
- ③ 면회를 갔다가 못 만난적이 있는데, 일주일간 문제를 일으켰다고 독방에 감금되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면회하고야 알았다. 그후로부터는 일주일에 두 번씩 서울에서 면회를 간다. 혹시나 면회를 안간 틈을 타서 무순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된다.

○ 전에 근무했던 작업치료사

- ① 감호종결 평가는 가족면회와 가족유무에 따른 가족의사가 결정적이다.
- ② 작은 액수의 돈을 훔쳤는데도 가족들과 연락이 되질 않아 10년 넘게 수감되어 있는 분

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 치료감호제도의 문제와 대안

앞서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치료감호제도는 피치료감호자의 인권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는 국가가 사회방위의 목적외에도, 혹은 사회방위라는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여서 감금하는 방법밖에는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절도의 경우도 가족들의 동의가 없으면 5년이고, 10년이고 치료받는 상태여야 하고, 우리가 면담했던 치료감호소측의 책임자 또한 우리나라 정신보건현실을 운운하며, 거리의 노숙자로 얼어죽느니 치료감호소에 있는 것이 낫다고 하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의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보호법이 가진 국가폭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치료감호제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의 경우 치료처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절제되지 않는 폭력적 행동과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또 재범의 위험성이 확실할 때 우리는 치료감호를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졌다. 지금의 정신보건현실에서 적절한 치료셋팅이 보장되어 있다면 결과는 다를지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내린 결론은 치료처분 자체를 없애기 보다는, 치료처분을 다양화하고 감호처분은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는 등으로의 전환이었다. 어쨌든 형법에 의해 벌을 주지 않는 다하더라도 범죄에 따라 꼭 필요한 치료는 법률로써 규제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번뇌와 갈등이 있었음을 사실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했다.

따라서 현행 치료감호제도가 가진 1) 치료와 관련한 보안처분으로 치료감호(격리를 통한 보안처분)만 규정하고 있고, 치료감호 요건이 매우 포괄적이며, 2) 행형법을 준용하고 있고, 3) 감호 기간이 부정기이고, 4) 법무부 소속 사회보호위원이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를 결정하며, 5)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 등을 보안하기 위하여 몇 가지 대안이 필요하다.

첫째는 치료처분대상군을 줄이자는 것이다. 대상범죄를 줄이든, 대상군을 줄이든 '진정한' 사회방위의 목적만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꼭 필요한 치료처분의 대상에게는 그 처분의 내용을 다양화하자는 것이다. 무조건 가두던 과거를 접고, 이제 비수용화(비요양원), 지역사회 거주 중심의 인권적 치료, 탈수용화, 종합병원의 외래치료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극단의 경우만을 감호하

고 국립정신병원에서의 입원치료, 그리고 외래치료명령제도등을 통해 지역사회 거주중심의 치료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부정기의 문제에 있어서는 앞서 첫째, 둘째의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법무부의 사회보호위원회가 평가하는 것이 아닌 제3의 독립기관이든, 민간병원이든, 치료받고 있는 병원 전문의의 감정과 사법부의 판단을 따르자는 것이다.

그밖에 치료환경에 대한 보장, 인권침해를 호소할 수 있는 통로, 감호기간의 상한선제 등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가 필요하다.

III. 보호감호제도 폐지를 위한 공대위에서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대위까지

행형제도와 인권침해라 해서 감옥과 감호소이야기가 주를 이룰 것이라 기대하고 온 이들에게 조금은 미안한 감이 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하에 벌어지는 보호감호제와 치료감호제는 국가폭력의공통분모를 가졌기 때문에 초기 연대체의 이름을 정할때부터 “보호감호폐지냐, 사회보호법폐지냐”의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인의 처우와 관련해서도 동일한 맥락을 가졌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어쩌면 공대위내에서도 보호감호제 폐지만을 주장하는 것이 간단(?)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보호감호제와 마찬가지의 치료감호의 인권 침해를 무시하고 넘어갈수가 없었고, 더군다나 당사자들이 나서거나 주장하기 힘들다는 점, 가족들이 오히려 감호소에 있기를 바랄수 있다는 점등이 치료감호를 지금까지 불들고 있는 우리의 고민이었다.

지금 사회보호법은 법무부, 인권위,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다. 보호감호소출소자들은 법무부와 국회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청송감호소내에서는 단식농성을 했다. 치료감호소에서는 물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 공대위에서 치료감호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대안을 놓고 워크숍을 준비중에 있다.

사회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그리고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우호적이지 않다. 더군다나 이 둘이 결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이들에게 인권이란 더더욱 먼 산에 불과하다. 이제 이 먼 산을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권활동가들이 선언한 사회보호법 폐지 성명의 마지막을 다시 한번 적어본다.

우리는 사회보호법이 반인권적 제도임을 확신하며, 또한 이 법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인권과 정의, 그리고 역사의 이름으로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촉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보호법 폐지에 즉각 나서라!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다산인권운동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 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앰네스티 한국지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교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평등노조 이주지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총 26개 민간단체)

평화의 권리로 생각하는 이유¹⁾

손상열(평화인권연대)

1. 기존 인권규범에서의 평화관

- 여러 인권규범에서 평화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이자 조건으로 기술되는 경향이 있다. 국내적 혹은 국제적 무력충돌이 없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인권의 실현과 보장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예컨대,

- 세계인권선언 28조는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 평화에 대한 권리선언(유엔 총회 결의 39/11, 1984.11.12)은 전쟁 없는 삶이 모든 나라의 물질적 안녕과 발전, 진보, 권리와 자유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국제적인 필수조건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지구 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민들에게 “평화에 대한 신성한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 몇 가지 생각해볼 점

- 기존 인권규범에서 평화를 정의하는 방식은 소극적이다.(전쟁이 없는 상태로서의 평화). 이러한 관념에 따르면, 평화를 위한 주된 관심사는 전쟁과 폭력을 발생시키는 구조는 인정하되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혹은 ‘무력충돌이 없는 상태를 어떻게 조성해나갈 것인지’에 맞추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사는 평화를 위한 행동방안으로서 국제기구를 통해 전쟁과 관련한 규범제시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정당한 조건에 대한 규범, 혹은 전쟁중의 적절한 행위규칙에 대한 규범) 혹은 위협요인 감소(군축, 무기이전통제, 무기개발통제등)를 위한 규범제시에 의존하게끔 하는 경향을 갖는다. 이러한 행동방안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평화관이 전쟁과 폭력을 발생시키는 체계의 문제, 전쟁과 폭력에 대한 동의를 사회주체들에게 내재화시키는 가치체계 혹은 이데올로기의 문제 등에는 둔감할 수

1) 기존인권규범에 대한 평가속에서 평화권의 의미를 생각하는 훌륭한 글로 배경내, 「평화에 대한 권리의 의미와 실현방안」을 참고할 수 있다. 이 노트는 배경내의 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밖에 없다는 점이다.

- 평화를 독자적 인권이 아닌 인권보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파악하는 관념은 인권과 평화를 충돌시키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관념에 따라 등장하는 문제의 대표적 사례가 ‘인도주의적 개입전쟁’ 혹은 ‘정의로운 전쟁’을 둘러싼 논란이다. 모든 인도주의적 개입전쟁의 명분은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인권침해적인 체제를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 혹은 “더 큰 인도주의적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개입이 필요하다는 논리” 등에 기반해 있다.

3. 평화의 권리를 생각한다는 것

- 평화의 권리를 생각한다는 것은 기존의 인권규범이 침묵하고 있던 영역을 적극적으로 사고하여 인권개념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태도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전쟁과 폭력의 근원으로서 세계화
- 전쟁과 폭력에 사회주체들을 동의시키는 가치체계이자 이데올로기로서 군사주의, 안보론
- 전쟁론 : 정의로운 전쟁?

cf. 세계화 비판, 군사주의 비판, 안보론 비판은 워크샵의 다른 발제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 또한 평화의 권리를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시되어 인권침해로 느끼지 못하는 사회적 측면에 대해 평화권의 구체 항목을 개발, 실현하면서 문제제기하려는 태도가 아닐까? 예를 들어, “왜 ‘안보’를 결정하는 주체는 항상 국가인가?” “국가안보 혹은 군사안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서 안전의 내용을 정의하고 결정하는 권리가 박탈되어 있다는 뜻이 아닐까?” (안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혹은 양심적 거부권을 확대해석하여 전쟁에 협조하지 않을 권리로서 ‘무기, 탄약, 무기 보조장비의 제조 생산 판매에 대한 참여를 거부할 권리’, ‘군사 목적의 통신, 운송, 건축에 대한 참여를 거부할 권리’, ‘무기 장난감의 생산 판매에 대한 참여를 거부할 권리’ ‘군사 목적의 연구활동을 거부할 권리’ ‘유치원 등 교육시설에서 군사분야와 관련된 자료 및 홍보물 부착을 거부할 권리’ ‘방위세 납부를 거부할 권리’²⁾ 등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cf. 이중 방위세 납부를 거부할 권리에 대해서는 별첨자료 “전쟁세거부와 평화세제정운동 : 소개와 검토”를 참고하라

2) 이러한 예들은 이대훈, 「양심적 병역거부와 덧붙이는 이야기」에서 인용했다.

별첨 : 전쟁세거부와 평화세제정운동 : 소개와 검토

“우리가 그들에게 돈을 대고 있는 이상, 국가는 폭력을 저지르고 무고한 시민들을 피흘리게 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 수천명이 이것을 거부한다면, 국가는 더 이상 잔인한 폭력의 도구를 얻지 못할 것이다”

헨리 데이비드 쏘로우, 1846-1848년 멕시코-미국 전쟁 당시

1. 전쟁을 거부할 권리, 평화를 선택할 권리

○ 전쟁세 거부는 매우 간단한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 국가의 군사활동(전쟁, 군비증강, 군사주의확산)에 납세를 통해 암묵적으로 사회적 자원을 투자하는 행위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전쟁거부자연맹(WRL)은 납세를 통한 국가의 군사활동지원이 다음과 같은 사회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요약한다.

- 전쟁을 증가시킨다: 전쟁은 의도적인 살인, 구금, 대량살상, 구금, 부정의, 기아와 빈곤, 억압, 추방, 생태 파괴를 불러온다.
- 군사주의를 강화한다: 군사주의는 우리를 폭력에 무의식적으로 동의시키는 이데올로기. 군사주의는 폭력, 증오, 인종 차별, 성차별, 동성애혐오, 절도, 빙곤, 그리고 지구자원의 부주의한 고갈을 낳는다.
- 인간의 자유를 감소시킨다 - 전쟁과 군사주의는 개인의 일상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증가시키며, 이에 따라 인간의 자유는 말살된다.
-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감소시킨다. - 군비지출은 보건의료, 주택, 식량, 고용, 교육, 환경보호등에 들여야 할 우리의 자원중 많은 부분을 소모시킨다. 세계 군비지출은 현재 세계인구의 절반이 벌고 있는 수입을 합한 것과 맞먹는다.
- 국제법을 위반한다 - 뉴伦베르그 원리중 4원리와 6원리
- 양심을 침해한다. - 인간은 그들이 가진 양심과 신념에 따라 전쟁과 군사주의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양심을 존중받기를 요구할 수 있다.
- 그러므로 전쟁세거부운동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한다.

- 국방비납세가 국가안보, 군사주의의 필요성에 대한 무의식적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인

이상, 전쟁세거부운동은 그 무의식적 동의의 저변을 이루는 안보론과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 전쟁과 군사주의의 확산이 인간의 자유와 여러 차별적 이데올로기, 여서 사회적 권리의 제약으로 귀결되는 만큼, 전쟁세거부운동은 인간의 기본권을옹호하고 신장시키기 위한 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전쟁에 대한 투자를 거부하고 평화를 선택해 사회적 자원을 투자하는 대안시스템의 도입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의 변화를 실천하는 사회운동이다.

○ 전쟁세거부운동은 종종 평화세제정운동과 짹을 이루어 진행된다. 평화세란 납세를 통해 정부의 군사활동을 지원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제안된 것이다. 평화세는 전쟁세에 대한 양심적 거부자들의 인권을 강조하고, 특정한 형태의 평화기금을 만들어 군비가 아닌 평화를 선택해 납세를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제안하며, 평화기금에 적립된 자원을 오로지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촉구하는 운동이다. 평화세법안 제정운동은 현재 미국,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호주, 이탈리아등 7개국에서 의회에 상정되고 있는 중이다.

2. 전쟁세거부에 대한 국제적 인권규정

- 전쟁세거부는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여러 국제규약으로부터 도출되는 양심에 따른 거부권을 실현하는 한 형태로서 사고될 수 있다.
 -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세계인권선언 제 18조(1948)
 -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 9조(1950)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 18조 (1966)
- 유엔 인권이사회 일반논평 22 (1993)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 18조로부터 양심적 거부권이 도출될 수 있다고.”

cf. 양심적 거부권의 내용들

- 한국에서 양심적 거부권과 관련한 논의는 주로 병역거부에 맞추어져왔으며, 병역거부의 형태로서 선택적 병역거부, 절대적 병역거부등이 논의된 바 있음.

- 그러나 역사적으로 진행된 운동 속에서 양심적 거부는 매우 다양한 아이디어와 형태를 포괄하는 것이었음.

○ 1993년 유럽의회는 양심적 거부권을 병역거부뿐만이 아니라 납세를 통한 군사시스템 지원 문제에까지 연장시키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한편, 전쟁세거부/평화세계운동을 펼치는 운동가들 또한 '군비지출에 협조하지 않을 권리'를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국제적인 운동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 유럽의회, Commission of Civil Liberties and Internal Affairs (1993)

"유럽의회는 납세부분에 대해서도 양심적 거부권을 기본적 권리로 고려하고 있으며,..."

- 세계교회협의회(1990)

"병역 및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납세를 양심에 따라 거부할 권리를 지지하며, 이에 대한 대안적 형태들이 제공되어야"

- Conscience and Peace Tax International (CPTI)의 창립선언(1994)

1994년 9월 18일, 스페인 바스크 지방에서 열린 전쟁세거부자/평화세계운동가들의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선언으로 '군비지출에 협조하지 않을 권리(the right of non cooperation with military expenditure)'를 명시하고 있음

"모든 인간에게,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이같은 권리와 의무를 조화롭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누구도 심오한 양심에 따른 신념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에 기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인간을 살상하는 과정에 능동적으로나 수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권리와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군사적 수단이 국제관계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믿도록 교육받아왔다. 그러나 우리는 병역복무·납세 혹은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하여 군사 활동을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는 어느 누가 우리에게 이 같은 방법을 통해 군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제하는 것 또한 양심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인류와 각국 정부들에게 군비지출에 대한 양심적 거부를 존중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모든 군사지출과 군사활동을 철폐하는 것이다. 우리는 군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인간의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Hondarribia Declaration, 1994년 9월 18일"

3. 전쟁세거부운동의 개괄적인 흐름¹⁾과 논쟁

○ 전쟁세거부는 역사적으로 유례가 깊음. 기원전 400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와 2세기경 이집트에서도 전쟁세에 대한 대중적 불만과 집단적인 납세거부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12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미국,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헝가리, 러시아 등지에서 전쟁세 거부자가 있었다는 기록도 발견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쟁세거부운동의 직접적인 뿌리는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이며, 이를 계기로 전쟁세거부운동이 집단적인 운동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음.

○ 미국에서는 1966년에 존 바즈라는 여성이 그녀의 수입세 중 60%를 베트남전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납세를 거부하면서 대규모의 전쟁세거부운동이 일어나게 됨. 존 바즈를 포함해 1965년에는 일군의 평화주의자들이 "No Tax for War in Vietnam Committee"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납세거부를 집단적으로 조직하게 되었으며, 이 운동의 결과 1967년까지 약 500여 명의 시민들이 납세거부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60년대 반전운동의 성장과 함께, 전쟁세거부운동도 발전하여, 수백 명에 이르던 전쟁세거부자들이 수만 명으로 확대되기도 하였음. 당시 존 바즈와 노암 촘스키 등 370여 명이 참여한 'No Tax for War in Vietnam Committee'는 워싱턴 포스트에 납세거부를 선언하는 광고를 게재하기도 하였음.

○ 전쟁세거부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1966년경에는 전화세 중 10%의 납세를 거부하자는 운동이 칼 마이어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전쟁거부자연맹(War Resisters League)은 이 운동을 60년대 말까지 꾸준히 진행해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기도 하였음. 비슷한 시기에 켄 크누드손은 전쟁세거부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W-4 resistance를 제안하였으며, 이 아이디어에 바탕한 운동 또한 종교단체, 평화주의자들, 전쟁거부자연맹 등 여러 조직들에 의해 60년대 말까지 진행되었음. W-4 resistance는 원천징수에 저항하는 운동으로서, 구직시 적어내는 W-4 form에 원천징수 '면제'를 선언하거나, 원천징수를 피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 등 필요조건을 W-4 form에 써내는 운동이었음. 이에 대해 정부는 납세기피혐의로 관련자를 고소하였고, 6명 가량이 수감되기도 하였음

○ 1970년에 이르자 미국의 전쟁세 거부자들은 대략 2만 명 가량에 육박하게 되며, 전쟁세거부자들 또한 수십 만에 이르게 됨. 많은 전쟁세거부운동 그룹들은 지방 곳곳에서 '민중생활기금'

1) 참고자료의 한 계상 미국에서의 전쟁세거부운동을 중심으로 20세기 전쟁세거부운동의 흐름을 개괄하는 것으로 하겠음.

운동을 펼쳤으며, 시민들은 납세를 거부한 돈을 이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역 공동체프로그램에 지원하기도 하였음. 72년에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평화세기금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기도 하였으며, 현재에까지 평화세 제정운동이 펼쳐지고 있음. 평화세 법안은 양심에 따라 전쟁세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제도화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으며, 납세거부한 액수의 재원을 평화세로 조성해 평화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레이건 정부의 등장과 함께 군비지출이 증대되고 군비경쟁이 가속화되자, 군비경쟁과 핵무기경쟁을 이슈로 하는 전쟁세거부운동이 다시 한번 불붙기 시작함. 이러한 노력이—결과로 1982년에는 National War Tax Resistance Coordinating Committee (NWTRCC)이 조직적 성과로 구성되게 되었음. 냉전해체이후 상황…

○ 정리하자면, 반전운동의 굴곡과 함께 발전하기도 쇠퇴하기도 하였지만, 시민들의 일상과 전쟁, 군비경쟁, 핵경쟁, 정부의 군사관련 활동 등을 연결시키는 대중적이며 일상적인 운동형태의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주의깊게 보아야 함. 그리고, 전쟁세거부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다음과 같은 논쟁의 의미 혹은 사회적 영향 또한 주의깊게 바라보아야 함

- 납세를 기피하는 범죄 vs 납세거부는 양심의 실현
- 납세의무의 파괴 vs 저항권의 발휘
- 준법정신이 결여된 물상식한 행동 vs 상위법인 국제법의 정신(뉴伦베르그원리등)에 충실히 행동
- 평등성의 원리 위배 vs 대안적 제도(평화세)마련을 통한 평등성의 실현
- 국가안보 혹은 안보의 집단성을 강조 vs 인간안보 혹은 안보의 개인성을 강조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위배 vs 시민불복종을 통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진전

4. 전쟁세거부운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 방향 : “전쟁에 협조하지 않을 권리”를 보편적 인권으로 정식화하여, 안보론비판·반군사주의·반전·평화에 대한 사회적 논쟁과 실천을 조직
- 준비 1 : 예상가능한 논쟁에 대한 대비와 사회운동내부의 인식증진을 위한 노력
- 워크샵과 소책자 발간 :
 - 전쟁세거부운동의 정당화논리로서 시민불복종, 평화에 관한 인권규범정리, 양심

의 자유, 안보론 비판, 군사주의 강화기제들, 무기거래와 군비실태조사와 사회적 효과등등

- 세계적으로 정부의 군사활동에 반대했던 다양한 사례 수집
- 한국에서의 의미와 실현가능성에 대한 탐구
- ...
- 운동그룹 접촉 및 조직화 : 인권단체, 양심적 병역거부자, 종교단체(혹은 평화교파들), 평화운동그룹, 법률가그룹

○ 준비 2 : 본격적인 운동 준비 - 평화세 법안마련과 공청회 - 캠페인 준비 등등

여성주의가 비판하는 안보론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 WAW 진경

그동안 국가안보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것을 방어하거나 신장시키는 과제들은 언제나 남성들의 몫이었다. 여성은 '국가안보'에서 배제되어 왔고 국가와 그 국가의 남성들에게 보호받는 존재로 여겨졌다.

고대에서부터 근대 이후로까지, '시민'의 개념은 '전사'의 개념과 일치한다. 싸울 수 있는 남성들만이 '일등시민'이 되는 것이다. 일등시민이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사내다움'이며 사내다운 미덕은 전쟁에서의 승리, 영웅 이미지와 연결된다. 강력한 남성성의 이미지에 의존하고 있는 이러한 전사-시민권의 개념은 분명 근본적으로 젠더화 되어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군인이 된다는 것과 남성성, 시민권간의 깊은 상호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는 계속해서 국가정당성의 많은 부분을 국가의 안보에 대한 역할에서 끌어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안보'에 대해서만큼은 국가가 확실하게 해결해주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이에 따른 물질적, 정신적 복종도 기꺼이 마다하지 않는다.

정교한 청중

진정한 안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담론에서는 여성들의 입장과 위치에 따라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서구 중산 계급 여성들이 핵전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제3세계 여성들은 제국주의, 군사주의, 인종주의 및 여성에 대한 멸시와 관련된 구조적인 폭력을 이야기하며 이 것은 '불안정'이라고 정의하는 것에 간격이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들은 타인의 불안정에 기초하는 안보가 아니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안보에 관한 페미니스트들의 관점은 폭력과 억압이 그것이 국제적인 문제든, 국내적인 문제든 -가정의 영역을 비롯하여 흔히 개인적인 것이고 사소한 문제라고 치부되는 문제들- 상관없이 상호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크고 중요한' 상황과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연결성을 위계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이다. 때문에 안보에 대한 재정의는 지배와 복종의 젠더 관계에서 유래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배제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여성과 평화가 관련되어 있다는 신화를 둘러싸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성-평화의 연결적인 현상이 무력을 갖지 못한 상태 때문에 단지 여성들에게 수동적으로 부과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서구사회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여성의 도덕적 우위성과 모성애 찬양이라는 빅토리아시대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성장했다. 여성의 남성보다 더 도덕적이며 어머니로서의 위치는 생명을 낳고 기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평화와 더 가까울 수 밖에 없다는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실제로 평화운동 안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내의 소수자의 목소리들을 묻어버리거나 하나로 묶어버리려 한다.

안보에 대한 여성의 정의는 다층적이면서 다차원적이다. 어떤 하나의 맥락으로 단순화 시켜서 보면 그 밖의 문제들과 그 연결 지점들을 고민하지 못하게 된다. 여성은 그것이 군사적이건, 경제적이건 또는 성적이건 상관없이 '폭력이 없는 상태'를 안보로 정의한다. 이는 단지 가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글은 안 티커너의 '남성, 국가, 그리고 전쟁: 국가안보의 젠더화된 관점' (「여성과 국제정치」, 부산외대 출판부, 2001)의 내용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무장한 세계화에 맞서는 반전운동의 방향

이소형(사회진보연대)

1. 세계화의 진실

경제적, 금융적 세계화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일반화된 발전이나 세계 인민의 삶의 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금융적 세계화'란 근본적으로 미국, 그리고 그보다는 덜하지만 유럽연합을 지배적 지역으로 하는 위계적인 금융축적의 과정이다. 이는 초민족적자본의 국경을 넘는 인수, 합병과 해외직접투자의 70% 이상이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에서 이루어졌다는 지표로 쉽게 확인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공간은 확대되었으나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에 근거한 금융자본의 지배에 의해 수많은 나라와 지역의 경제는 파괴되었다. 1999년 제3세계국가들의 일인당 평균소득은 제1세계 국가의 46%에 불과했다. 중심부 국가들이 구조조정을 거치며 노동자계급의 지위가 하락하고 저임금 노동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심각한 정도로 주변부에서의 '자본축적의 네트워크' 자체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이 둘간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쌍방이 하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93년 소련의 소멸 이후 더욱 강화된 미국의 혜계모니적 지위는 1997-98년 전세계적인 만성적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속적 성장을 지탱할 수 있었다. 미국은 금융세계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의 자본은 유례없는 수준으로 미국에 집중되어왔다. 자본이 집중되면서 어떤 다른 지역도 미국을 대체할 새로운 생산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지 못하며 이를 대가로 미국은 '신경제'라 명명하였고, 덕분에 이윤을 회복 뿐 아니라 주식시장의 봄과 거품경제까지 감당해야 했다.

주식시장 호황과 1997-98년 '아시아 위기'의 충격의 회피, 1999년 코소보 전쟁의 승리감은 몇 년 동안 산업설비의 과잉축적 상태를 망각하고 또 성장을 위해 거대한 규모의 국내외 신용 및 부채에 의존해왔던 미국경제의 모순들을 은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물질적 성장없는 금융적 팽창을 통해 이윤을 저하 경향을 상쇄하고자 했던 '신경제'는 무한정 지속될 수 없었다.

2. 9·11 이후, 미국이 처한 딜레마

2001년 9월 11일, 미국경제는 이미 침체에 빠져있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경제'의 환상은 사라졌다. 당시 금융시장은 추락하고 있었고, '주주 가치'와 영속적 외채 이자에 근거한 금융자본의 꽃들(엔론, 월드컴, 회계·자문회사들)은 타격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역으로 세계의 인민들의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미국의 새로운 정책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수용하지 않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금융자본가들의 이익에 대해 제기하는 위협을 인지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사활적 이익', 즉 '그것이 위협받는다면 군사적 개입이 필요한 이익'을 정의내렸다. 미국의 국가안보계획서에서 이렇게 정의된 '사활적 이익'이란 핵무기·생화학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위할 권리를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무역·금융·운송·에너지 네트워크와 환경 같은 세계적 차원의 주요 시스템의 안정성의 유지"에 대한 공격 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위할 권리도 포함한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안정성의 유지'를 공격하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신호, 911 이후 사회적 저항을 범죄화하려는 시도에서 훨씬 더 분명해진 신호다.

911 테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어 『국가안보전략』(2002.9)을 공표함으로써 앞으로 수년간 미국의 행동 계획을 선언한다. 여기서 미국은 자신의 이익이 위협받는다고 간주할 때에는 언제나 예방전쟁을 수행할 권리를 당연히 갖고 있다. "테러리스트적 폭력과 혼란"에 의해 야기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취해지는 예방적·선제적 행동은 "인간적 존엄성의 협상할 수 없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가치는 "자유(평화)·민주주의·자유기업"이다. 자유기업 또는 자유무역·자유시장이라는 원칙이 세계 각지에서 문제시될 때, 미국의 국가안보는 보장될 수 없다는 뜻이다.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탈규제정책, 한계조세율을 인하하는 재정정책, 금융시장을 부양하는 통화정책, 전미자유무역지대의 창설, 다자간·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부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등이 그것이다. 코소보에서의 나토의 전쟁과 동시에 동유럽에서 나토의 강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을 기화로 한 중동지역에서의 거점 확보, 이라크 전쟁 등은 미국자본의 이익을 방어하고 확대하는데 전쟁이 점점 더 큰 중요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한편 미국의 군사안보 복합체는 새로운 무기체계를 계발하는 중이다. 세계화가 사회적 파탄을 가속화하고 있는 맥락에서는 국방부 전문가들이 말하는 '도시 전쟁', 즉 침단무기로 무장한 보병들이 공습과 교대로 수행하는 전쟁의 준비가 국방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 저항이 범죄화되는 세계인민들에 대한 전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군안복합체의 미래는 밝다. 신자유주의는 무장력을 필요로 하고, 그것의 파괴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결

과는 그 필요성을 좀더 강화하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이는 1990년대 미국의 군수산업이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세계화에 포섭되는 과정이다.

이제 시장은 ‘무한전쟁’을 자신의 전망 속에 통합한다. 예컨대 국제통과기금 총재인 퀼러는 이라크와의 단기전은 “상황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이므로 세계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며 ‘시장’과 전쟁이 현재 상황에서 상호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따라서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는 의지가 부시 행정부가 설정한 목표임은 분명하다. 세계경제의 전망이 총체적으로 불확실하고 또 지구상의 대부분의 지역이 위기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된 나라들의 금융자본이 이전보다 더욱 미국을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라크 전의 단기 승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회복은 불투명하다. 군비지출의 증가는 세계적 규모에서는 물론이고 미국에서 조차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군안복합체의 ‘주주가치 창출’은 대부분 국방예산과 안보관련 지출의 수준에 의존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또 이라크전의 승리로 돌아오게 될 막대한 전리품, 즉 이라크 유전 사유화를 통한 부의 창출은 일부 초국적자본이 영유할지언정 그 자체로 미국 재정 수입 증가로 귀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헤게모니 상승을 특징짓는 ‘좋은 전쟁’과 달리 헤게모니 쇠퇴를 특징짓는 ‘나쁜 전쟁’은 결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셈이다.

여기서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개입을 부시(혹은 네오콘이라 불리는 매파) 행정부의 호전적 특성에서 찾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미국이 EU, 러시아, 중국 등의 부상을 견제하고 자신의 유일 패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전쟁을 불사했다고 보는 사람들은 대이라크전을 고전적인 제국주의 전쟁과 유비함으로써, 현재 미국의 일방주의를 문제삼는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부시 행정부에게 특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1990년대 전반에 특징적인 현상이다(예컨대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1990-1999)에 1945-90년대보다 더 많은 대외개입을 수행했다). 또 현재의 미국을 고전적인 ‘제국주의’로 묘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현재 미국의 군사력과 다른 발전된 나라들의 군사력 격차가 20세기 초반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범대서양 지역 나라들 사이의 경제적 갈등이 군사적 대결로 전화할 가능성—제국주의 열강간의 전쟁의 가능성(즉 북·북 간의 갈등)—은 현저히 낮아졌다. 대신 주변부를 선별적으로 포섭하거나 배제(또는 심지어 절멸)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현재 미국이 수행하는 ‘새로운 전쟁’의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세계적 무질서’를 단독으로 관리할 능력도, 의지도 없기 때문에 ‘세계화의 무장력’으로서 나토나 (한)미일 동맹과 같은 범대서양·범태평양 동맹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사실은 ‘제국’ 또는 ‘일방주의’라는 분석을 보다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통치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주변부 국가들에 대한 중심부 국가들의 공동지배(condominium)’

라는 용어의 선택을 선호하게 만든다.

3. 금융세계화와 한반도, 그리고 전쟁위협

세계금융도시 네트워크으로의 편입과 배제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양대축은 상시구조조정시스템(시장)에 기반한 기업(재벌)·금융구조개혁의 지속과 이른바 ‘동북아중심국가 건설’로 명명된 한국경제의 새로운 중장기 성장 전략의 추진이다. 한국경제는 지난 수년간 강도높은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수행함으로써,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진 아메리카화된 경제작동방식을 갖추게되었다. 이제 DJ정권 5년의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성과를 이어 받고자하는 노무현 정부에게 부여되었고, 그 스스로 자임하는 정책개혁의 새로운 임무는 한축으로는 시장운영원리에 따른 구조조정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지도록 지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세계화된 세계시장에 이미 상당정도 최적화된 한국경제를 재편입 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비전의 구체화와 그 실천인 것이다.

그 중장기적 계획은 노무현 정권은 취임 직후 발표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건설”계획에서 읽을 수 있는데 문제는 남한 자본주의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계를 화려하게 치장한 초라한 실현가능성과 불투명한 경쟁력이다. “자동차, 철강, 조선에서 동북아 거점으로!!”라는 캐츠프레이드에서 단적으로 나타나듯이 한국경제의 중추를 담당해온 수출지향형 산업이 변화한 세계시장에서 미래 비전을 상실했음을 명확하다. 그래서 동북아 플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 비전과 과제란 대략, 동북아 부품 및 중간재 공급기지화, IT/BT/NT등의 첨단기술 산업 유치, 회계, 법률, 경영컨설팅, 광고업등 각종 기업서비스업 육성, 동북아 금융중심지화 등이다. 그런데 이중에서 실제로 무언가 국내 산업과 고용에 관련된 발전적 기회에 관련된 과제라고는 동북아 부품 및 중간재 공급기지를 만든다는 것뿐인데, 이 계획 역시 이름만 번지르하자, 그 속내란 일본에서 생산하기에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 중국에서는 기술력이 아직 부족해 생산하기 어려운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한 틈새시장 전략일뿐이다.

요는 동북아플랜이라는 틀이 유지되는 한, 그내에서 노무현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란 초민족자본에 대한 더욱더 많은 어거지식 특혜와 보다 철저한 자본위주의 노사환경을 제공하는 길뿐일텐데, 그같은 희생이 과연 플랜의 성공을 가져올지 매우 미심쩍을뿐 아니라 동북아플랜 자체가 지향하고 있는 성장전략이란 것이 과연 국민경제적 차원의 파이를 키워 미래의 분배를 약속하는 체제인가라는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한 자본주의가 동북아의 새로운 제국이 된다는 허무맹랑한 바램을 차치하고서라

도 한국경제의 성공적인 미래상을 금융세계화의 집약지인 글로벌시티(세계도시, Global City) 네트워크으로의 안정적 편입으로 그리고 있는 것은 반주변부에 속한 남한자본주의가 그릴 수 있는 최선의 이상향일 수밖에 없다. 금융세계화된 세계경제에서 중심국과 (반)주변국간의 경계는 이제 중심국과 (반)주변국을 가르는 '국경'이 아니라 중심국 내부와 금융세계화에 통합된 (반)주변국의 중심의 내부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에 도시와 농촌, 민국과 부국 사이에 그어졌던 불평등과 배제의 장막이 도시내부와 노동시장 내부의 계층별, 인종적, 성적 분할선을 타고 드러난다는 것이다. 가장 부유한 나라의 가장 발달된 도시의 중심에 가장 가난하고 철저히 배제된 자들의 계토화된 공동체가 존재하고, 그 담장너머엔 삶의 어떤 제약도 부과받지않은 한없이 자유로운 자들의 마천루가 펼쳐지게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이러한 구상은 경제자유구역의 전국화, 교육, 의료, 농산물 시장 개방 등 각종 규제완화, 완전개방의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드러나고 있다.

부시독트린으로 수렴되는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의 자기모순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당초 호언과는 달리 국방비 증액과 미국의 잇따라 파병압력을 수용하는 등 북핵위기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이 단지 허언에 불과했음을 보여준다.

1990년대 미국의 대북 정책 초점은 핵, 미사일로 상징하는 대량 살상 무기의 '완전한 제거'에 있다. 이를 위해 (폐리보고서에서 확인되듯) 북에 대한 포괄적 접근(engagement)을 시도하는데, 바로 '협상'과 '군사력의 증강'이라는 두개의 경로에 대한 동시적 추진이다. 과거 DJ 정부의 햅볕 정책은 (노벨상으로 빛나는 그 화려한 말잔치와 달리) 이것의 축소판 혹은 하위 파트너에 지나지 않으며, 남북관계는 늘 북미관계에 종속되어 있었고 따라서, 햅볕 정책은 바로 여기서 한계가 드러났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이 문제는 또 다른 점에서 문제를 드러내는데, '협상'이 '군사력 증강'과 별개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 증강'을 전제하거나 그것에 종속되어 전개된다는 점이다. DJ 정부의 헛별 정책은 물론이거니와 그 지지자들도 이점을 정확히 비판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결국 미국의 한반도 전쟁위협에 대해 대단히 무기력한 대응을 놓고 만다.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역시 이점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는데, 평화번영정책의 전제가 '북핵 해결'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과 '북한을 위시한 불특정 위협 및 비군사적 위협 동시대비전력 우선 보강'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이 같은 모순과 긴장은 미국의 군사적 수단 사용에 대해 부시 앞에서 말 한마디 꺼내지도 못하는, 되레 그것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의 채택으로 이어진 것이다.

더구나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바탕'으로 동북아의 물류, 관광, 무역, 산업의 중심 및 해양과 대륙을 잇는 '경제의 관문'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인식을 전제

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내포한다. 이를 뒤집어 놓고 본다면 동북아 혼브 중심 국가 구상을 방해하는 것이 평화롭지 못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은 한국에 대한 초국적 자본의 투자가 어려운 핵심요인으로서 '북핵' 더 나아가 '북한체제'라는 상징으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한반도 평화의 위협요인이 '북핵', '북한체제'라는 위협요인으로 뒤바뀌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지배세력에게 한반도 평화란 초국적 자본의 투자를 위한 안정성 확보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쟁위협을 통해서라도 북을 압박해야 평화로운 상황이 가능하다는 매우 위험한 인식에까지 이르게 된다.

평화번영정책에서 평화란 전쟁위협의 항구적인 제거라기보다는, (예외적으로 전쟁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경제의 불안, 투자의 불안 요인의 제거에 더 가깝다. 따라서 이같은 정책은 불필요한 전쟁 위협이 한반도 경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화를 앞세울 수도 하지만, 자본 투자의 불안 요인-위협을 제거한다는 이유로 미국의 '예방전쟁' 선제공격 전쟁을 지지하는 역설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위기를 더욱 증폭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4. 향후 운동의 방향성

'세계화'가 약속했던 평화와 민주주의는 거짓임이 판명됐고, 세계적인 부의 불평등과 빈곤의 확산, 빈곤의 여성화와 전쟁의 창궐은 역으로 미혜게모니의 약화, 자본주의세계체제의 위기를 상징하고 있다. 이는 중심부 국가간의 제국주의전쟁과 식민지해방운동 및 사회주의 운동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고안한 민족국가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주의 프로젝트가 냉전의 해체와 더불어 종료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형성되어 온 '민족주권'과 '국가간 체계'는 상대화되고, 초민족화된 자본의 지배에 조응하는 중심부 국가들의 주변부에 대한 '공동지배'와 이에 입각한 주변국에 대한 개입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위로부터 신자유주의를 보호하고 강제하기 위해 군사주의적 경향을 노골화하며, 과거의 '제국주의'와는 다른 새로운 '제국주의'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전쟁이라는 극단적 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과 이를 제거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반전평화'에 '미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를 결합해야 하며, 나아가 '미 제국주의'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통치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점에서 '무장한 세계화'에 대한 총체적인 비판으로 나아가야 한다. 반전운동은 전쟁의 정치·경제적 토대로서 미국(및 중심부 국가)의 대외·군사전략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통일적으로 인식, 폭로해 나가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금융·군사 세계화가 양산하고 있는 극단적·구조적 폭력을 지양함으로써 세계사회운동은 새로운 대안세계를 위한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이다.

군의문사 현황 및 제언

서석원(군가협 간사)

1. 군의문사 정의

: 2002 국가인권위 '군대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부분인용

사망의 원인은 크게 자연사와 변사로 나눌 수 있다. 변사에는 사고사, 자살, 그리고 타살이 있으며, 여기에 의문사라는 또 다른 범주가 존재한다.

군의문사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타난다. ①자살로 보기에는 많은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 수사기관이 과도하게 자살로 몰아가는 경우, ②강력한 타살의 근거가 제시되었는데도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조작하는 경우, ③비과학적이고 허술한 수사과정, 보안규정 남용 등으로 의혹을 증폭시키는 경우, ④자살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부내 내 요인을 배제한 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면서 납득할만한 동기 및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즉, 군의문사란 '타살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지만 사고사 처리 또는 자살 처리된 사망사건'과 '군 수사기관에서 자살로 결론을 내렸으나 유가족이 납득할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못해 지속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망사건'을 말한다.

2. 군내 사망사고 및 의문사 현황

가. 군내 사망사고 현황

1980년부터 1995년 말까지 15년 5개월간 군에서 사망한 사람은 총 8951명이다. 이중 자살 처리가 3263명(36.4%), 폭행치사 387명(4.3%)으로 연평균 577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전시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5년마다 1개 연대병력에 해당하는 인명의 손실이 있었던 셈이다

(한겨레신문 1995년 9월26일자 참조).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199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군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나 총사망자 대비 자살처리 비율은 오히려 늘고 있다.(아래 표 참조)

구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누계
사망자수(명)	359	273	248	230	182	161	158	1,611
자살처리(명)	103	92	102	101	82	66	79	625
자살처리율(%)	28.7%	33.7%	41.1%	43.9%	45.1%	41.0%	50.0%	38.8%

나. 천주교인권위원회 접수 의문사·폭력 사건 접수 현황(2003년 9월23일 현재)

구분	자살처리	자살기도	사고사	질병/구타	변사/병사	기타	계
군	89건	8건	8건	21건	6건	2건	134건
경	10건	1건	1건	5건	1건	.	18건

3. 군의문사 개관

: 2002 국가인권위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부분 발췌

군의문사 사건이 우리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 것은 80년대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에 의한 군의문사 사건을 제외하면 1998년 2월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발생한 김훈 중위 사망사건이후의 일이다. 당시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국회에는 '진상규명 소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언론을 통해 무수한 의혹들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의문사 유가족들이 하나 둘 오랜 세월 가슴 속에 고이 묻어두었던 의혹과 한을 한꺼번에 표출하게 된 것이다.

김훈 중위 사건의 해결을 위해 국방부는 1998년 12월9일 군검찰·합조단·기무사·정보사·국정원·민간검찰 수사요원 등 68명으로 '국방부 특별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999년 4월 'JSA 김훈 중위 사망사건 수사결과'가 발표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최초 자살로 발표한 내용을 다시금 확인하는데 지나지 않은 것이었고, 유가족은 이에 승복하지 않고 현재까지 소송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훈 중위 사건의 처리과정을 지켜보던 다른 군의문사 유가족들은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모든 군의문사 사건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재조사를 요청하였다. 그 결과 1999년 2월

국방부는 '의문사 처리과'를 신설하였고 각 군 본부는 참모총장 책임 하에 재조사를 위한 상설기구 설치와 운용을 골자로 하는 '80년 이후 군의문사 관련 민원처리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였다(국방부, 민원제기 사망사고 조사결과보고서).

그리고 다시 1999년 9월30일까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2000년 3월31일까지 민원을 접수 받아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1999년 7월에는 재조사 업무의 효율성 및 조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각 군에 대한 지도·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예하 의문사처리과를 별도의 독립기구인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으로 개편하였다.

특조단은 재조사 기본원칙과 절차에 대해 ①유가족의 고충이해와 국방개혁 차원에서 철저한 재조사를 통하여 진실규명 ②사건별 전담 조사반 편성으로 조사 실명제 실시 ③법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유가족 요구 수용 ④유가족(대리인), 유가족이 선임한 변호사, 자문위원 등 의 수사기록 열람 및 현장접근 보장 ⑤유가족 측에서 제시한 각종자료 재조사에 적극 반영, 검증 ⑥필요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군 이외의 전문기관 활용 ⑦유가족(대리인)이 요구 시 자문위원, 언론인 등 참가 하에 조사 설명회 또는 공개토론회 실시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민원제기 사망사고 3차 조사결과, 국방부 특별조사단 2000.12.21).

특조단은 지난 2003년 6월24일 군의문사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특조단의 활동성과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1999년 7월부터 현재까지 국방부 및 각 군에 제기된 민원은 총 264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5건은 군인이 아닌 사망사건이므로 회송 및 이첩하였고, 54건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5건은 재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재조사결과 변사, 일반사, 병사, 자살 등으로 처리된 사건 중 35건을 순직 처리하였으며, 재조사 완료된 205건 중 유가족 대부분은 그 결과에 동의하고 있으나 50건은 부동의 하였는데 그 사유는 유가족 측의 기대와 달리 재조사결과가 초동수사와 동일하게 되자 '군 수사는 믿을 수 없다'며 부동의 한 것입니다. 이처럼 국방부(특조단)에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지금까지 5차에 걸쳐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발표 후에도 발표자료를 책자화하여 청와대, 국회, 언론 등 관련기관에 배포함으로써 군내 사망사고 민원에 대하여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재조사를 통한 의혹해소와 법과 규정에 따른 결과조치 등 최선을 다해 왔으며, 재조사를 통하여 대부분 사건의 진실이 규명됨으로써 상당수 사건에 대해서는 순직처리 등 보상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소중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사건은 시간이 장기간 경과되어 사고현장 변형, 관련 참고인의 소재파악 곤란, 일부 수사기록의 부실 등 제한사항으로 충분

한 조사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조사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과연 특조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유가족들이 그 결과에 동의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대부분의 경우 유가족들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몇몇 사건에 대해서 기존 수사결론과 해석을 달리하여 순직처리를 해주고 유가족의 불만을 달랬을 뿐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애초 우발적인 사고사의 가능성성이 큰 사건들을 무리하게 자살처리 한 것들이라는 점에서 군의문사 문제에 있어서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하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유가족들은 재조사 도중 더 이상의 재조사 진행을 거부하고 특조단 해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특조단의 활동성과로 ①유가족 민원 및 군의문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 해소 ②재조사결과 상당수 사건의 순직처리 및 명예회복 ③사망사고 예방활동 활성화로 군내 사망사고 감소 ④군복무 중 자살자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 마련을 들고 있다.

그러나 특조단의 재조사는 △조사단이 군 관계자들로만 구성돼 있다는 점, △전역한 참고인의 진술을 강제할 수 없어 유족들의 의문을 풀기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점, △철저한 재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한 특조단이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만 가졌을 뿐 수사에 있어서 구인권이나 강제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 △설사 수사에서 어떤 의혹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사할 수 있는 방법과 권한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형식적인 조사에 불과했다는 것이 유가족 및 관련 단체의 주된 평가다. 결국 특조단의 재조사는 기존의 수사결과를 다시 한 번 인정해 주는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특조단의 재조사는 어떤 법적 효력도 없는 민원해소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현재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군의문사는 없다"는 공식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4. 군내 사망사고의 조사과정 개괄

:이행규 변호사, 2003. 6. 군의문사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

군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대체로 사건발생부대의 사건조사절차, 각군본부 인사참모부의 사망구분절차, 각 군의 영현절차, 국가보훈처의 보훈수혜결정절차 등을 거치게 된다.

군인의 사망사고 또는 군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민간과 마찬가지로 군검찰관이 '검시'를 실시한다. 검시를 거쳐 사인이 명백하고 그 사인에 대하여 유족이 수긍하는 경우에는 사인규명, 유족인도의 절차로 사망사고 조사가 종결되게 되나, 사인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인에 대하여 유족이 수긍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족 동의 하에 부검을 거쳐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게 된다.

그런데 군인의 사망사고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수사의 단서가 됨과 동시에 부대의 인력 관리 측면에서 전투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중대한 사건으로서 취급된다는 점이 특색이다. 이러한 전투력 관리의 측면에서 국방부전사상자처리규정 제5조 제1항은 "소속부대의 장은 사망자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24시간 내에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전문 보고한 후 7일 내에 사망확인조서에 사망진단(시체검안)서를 첨부하여 서면보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방부 규정에 따라 사망사고를 조사하는 군 수사기관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24시간 이내) 사망원인을 비롯한 결론을 1차적으로 도출하여야 하고, 적어도 7일 이내에는 소속부대장으로 하여금 소속 군 참모총장에 대한 서면보고가 가능하도록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망확인조서에는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보훈수혜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기치는 사망원인과 사망구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5. 군의문사 발생원인

가. 군수사의 근본적인 한계

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수사권한은 전적으로 군이 가진다. 수사의 대상인 군이 스스로 수사의 주체가 되고 있는 형국이다. 어찌 보면 타당한 논리다. 하지만, 군 조직이 갖는 폐쇄성과 폭력성, 비뚤어진 명예의식, 인사상의 불이익을 피하고자 하는 보신주의, 지휘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군검찰권,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고려한다면 이는 군수사의 근본적인 한계를 반증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것이 수사권한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였던 것처럼 군의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포천 농협 강도 사건이나 구리 임모 하사 총기·탄약 반출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일련의 사건들을 돌아보더라도 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사실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

결국 군의문사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군 복무중 발생하는 사망사고에 대한 군수사

기관의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데 그 출발점이 있다.

이와 관련 군법무관 출신 이행규 변호사는 조사의 공정성 문제로 보고 아래와 같이 논한 바 있다.

"군대에서는 사망사고와 같은 중요사건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사건에 있어서 당해 지휘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현병이 1차적으로 초동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부대장에게 지휘보고 한다. 이러한 지휘보고시 사실상 당해 사건의 처리방향 및 관련자의 처벌수위(구속 여부를 비롯한 형사처벌 또는 징계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지휘관은 자기 휘하에 있는 부대에서 발생한 사건이 자신의 진급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를 축소, 은폐하고자 하는 유혹을 멀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휘관 자체가 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도 있을 수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민간 검찰에 상응하는 군검찰 또한 소속 지휘관의 지휘에 복종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공정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책임있는 당사자가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며 수사를 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왜곡된 군사법체계로 인한 구조적인 불공정에 비추어 볼 때 유족들이 군내 사망사고에 대한 해당부대의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나. 천편일률적인 수사결과

자살로 발표된 군의문사 사건들 대부분이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사건이며 목격자가 없는 사건이다. 그러나 군은 이 사건들에 대해 타살의 혐의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자살이라고 판정을 내렸다. 군이 꼽은 자살의 원인들은 주로 내성적인 성격, 군복무 부적응, 불우한 가정환경, 여자친구의 변심 등이다. 수사기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그 원인들을 뒷받침하는 부대 내 주변 인물들의 진술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수사기록이 그리는 사망자의 모습이 대부분 유가족이나 친지들이 알고 있는 생전의 모습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으며, 심한 경우 허위사실이 버젓이 가공되어 수사기록에 오르기도 한다는 것이다.

군이 말하는 자살의 원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사망자가 못나고 나약해서 발생한 일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군은 죽음에 하등의 책임이 없다는 논리다. 수사기록에 부대관리나 사병관리의 문제, 구타나 가혹행위, 따돌림 등이 죽음의 일차적인 원인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수사의 목적이 진상을 밝히는 데 있다기보다 군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다. 비상식적인 수사관행

현장보존은 범죄현장에 남아있는 수사자료 및 증거를 보존하여 과학적으로 진상을 밝히기 위한 절차다. 따라서 현장을 가능한 한 발견 당시의 모습으로 일정기간 보존하는 것이 필수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도 군의문사 사건에는 이러한 상식이 통용되지 않았다.

현장에 대한 정리정돈, 물청소, 사체 이동, 피복 세탁, 증거물 소각 등 비상식적인 일들이 자행됐다. 또 현병대 수사관들은 직접적인 사인과는 무관하다며 감식 작업에 태만하거나 무지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유가족들의 의혹을 증폭시켜 왔다.

바야흐로 감식작업과 과학수사의 궁극을 보여주는 <본콜렉터>같은 영화나 <CSI과학수사대>같은 드라마가 대중에게 선보이고 있는 시대다. 이런 시대에 유가족들의 눈에 비치는 현병대의 구태의연한 모습들은 명백히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진술에 의존하는 현병대의 수사기법은 수사기록에 첨부되는 진술서들의 천편일률적인 내용만큼이나 유가족들의 의혹을 강한 확신으로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 제기되는 문제가 조사능력의 문제이다. 이행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군대의 현병은 군 사법경찰관리로서 민간의 경찰과 대응되는 수사기관이다. 현병인력은 장교의 경우 대체로 사관학교 또는 학사장교 출신 인력으로, 실질적인 수사를 담당하는 부사관(준사관 포함)은 대체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부사관 과정을 마친 인력으로 구성되고, 의무복무를 위해 징집된 병사들 중 차출되어 소정의 별도 교육을 받은 병사들이 피의자 호송, 영창관리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병의 인적구성, 인력충원 절차 및 보수교육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인이 불명확한 사망사고를 조사·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성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군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사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과학수사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혈흔·머리카락 등에 대한 유전자 감식 등 전문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라. 군의문사의 특수성과 부검

사인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부검은 자·타살 여부를 가리는 필수적인 절차다. 그러나 군의문사의 경우 부검은 그 특수성을 고려, 일반사망사고의 부검과는 다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가족들의 입장이다. 즉, 직접적인 사인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건강은 어땠는지, 업무상 발병의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구타 및 가혹행위의 흔적은 없는지 입체적인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검절차는 수사관들의 무능과 한계를 보완하는 전가의 보도로 이용되

고 있으며 현병대의 내사결과에 충실히 부응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군과 법의학자들의 부적절한 유착 문제마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법의학자들은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절대 군 조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신분이라는 것이다.

현행 부검절차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과관계가 중요시되는 군의문사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쪽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마. 보안규정의 남용

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가족들은 군사시설보호법상 해당 부대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현장에 들어갈 수 있으며, 군사시설보호법 제8조에 의해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를 금지 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코 현병대의 입버릇처럼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부대장의 허가 여하에 따라서는 모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TV화면에 예사로 비춰지는 화장실·취사장·식당·내무반·휴게실 등에서까지 촬영이나 묘사를 막고 기밀과 무관한 사건관련 진술에 대한 녹취를 막으며, 사건의 이해를 위해 확인이 필수적인 기본문서자료에 대한 접근마저 제한하는 현병대의 모습에서 유가족들은 군이 사건의 축소와 은폐, 면피에 급급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부대장의 허가 여하에 따라 가능한 일이라는 점은 고지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수사종결 후 유가족이 원하면 언제든지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입장만 취한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접근의 불편함 여부를 떠나 과연 모든 기록이 온전하게 보존되고 공개되겠는가 하는 문제에 회의적이다.

일단 군에 의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내려지면,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가족들이 직접 나서서 증명을 해야 하는 현 구조 속에서 사건자료 일체를 사실상 군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은 부당한 일일 수밖에 없다.

바. 불충분한 조사 기간

:이행규 변호사, 2003년 6월 군의문사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집 인용

위와 같은 조사능력과 전문기관의 부재와 함께 군내 사망사고의 조사에 있어 심각한 것은 조사시간이 여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24시간 이내에 사망원인과 사망구분을 (잠정적으로나마) 결론지은 보고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제약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현병으로서는 12~18시간 동안에 일웅의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군 조직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위와 같

이 내려진 '잠정적' 결론이 결국 7일 내의 서면보고상의 결론 또는 최종결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검찰관의 검시 또는 부검절차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병의 사망확인조사 내용이 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보훈혜택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그 내용이 충분한 조사와 심사숙고 끝에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할 때 현재와 같은 촉박한 조사기간은 큰 문제이다.

6. 군의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가. 특별법 제정

군 당국에 대한 불신이 극도에 달해 있는 현 구조 속에서 군의문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군의문사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군의문사 문제만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군내사망사고 처리과정의 제도적 개선

아울러 앞으로 발생하는 군내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담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관련 법령을 개정, 전담조사국을 설치하고 전문조사요원을 충원하며 합당한 권한을 부여해 향후 군내 인권을 보호하고 수호하는 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군대 내 사망사고 처리과정에 있어서 군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유족대표·인권단체·국가인권위원회 등 민간이 참여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국방부 직할 또는 각 군 본부 직할의 민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조사기구를 만들어 상설화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이와 관련 특조단은 현재 군은 사망사고 발생시 사고대책반을 편성, 유가족측의 입장에서 초동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유가족이 지정하는 의사, 교수 등을 참가시켜 사체검안을 실시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찾아오는 유가족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위의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을 차지해 관련 단체들은 이것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 발상의 전환

군 복무 중 자살한 병사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이들은 비전투손실로 취급되며 군의 전투력과 사기를 약화시키는 반국가적인 범죄자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기본적으로 정병제도를 통해 엄격히 선발된 사람이며, 직무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업무 수행 외에는 안전하게 복무할 권리가 있었던 사람이다. 따라서 군 생활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모든 종류의 사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고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귀찮은 존재, 시비를 거는 존재로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 유가족들은 사망사건에 대한 의혹 및 책임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의혹을 풀어줄 의무가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기존의 "자살을 하고도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자식교육을 올바로 시키지 않아서 자살한 것 아니냐?"라는 식의 접근은 지양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을 외치며 사체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유가족들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유골을 임시 안치할 수 있는 합동봉안소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희생자들을 위한 묘역 조성과 유가족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라. 군 수사방식의 개선

초동수사 강화가 필수다. 1) 사망사고의 경우 현장 보존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 수사관 및 일반 장병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진술에 의존하는 현 수사 관행을 탈피하고 면밀한 감식 작업과 정밀 부검 등 과학적인 수사를 지향해야 한다. 현병대 수사관들의 자질 향상 및 장비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 3) 군의문사의 특수성을 고려 수사과정 및 부검에 있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과관계를 파헤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4) 보안규정을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적용, 각종 정보에 대한 유가족의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불필요한 의혹이나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5) 군내 사망사고 발생시 유족이 의혹을 제기할 경우 초동수사 단계부터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3자·국가인권위원회, 인권시민단체·의 조사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6) 의혹이 제기되는 군내 사망사고의 경우 유가족 요청 시 모든 기록은 수사결과 발표 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제도 개선

장기적으로는 군형법과 군사법원법 등 군의문사 양산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군사법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군사법원법상 군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 폐지, 군형법상의 범죄가 아닌 일반범죄에 대한 재판권할권의 민간 이양 등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연구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제도 하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가령 사망사고와 같은 특수한 경우 군 검찰과 일반검찰이 합동수사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변사보고 즉시 일반 검찰과 함께 검시 및 현장 감식 등 초동수사에서부터 일 반검찰과 함께 수사를 하도록 하면 상당한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행 유가족에게 전가되어 있는 입증책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살이 아님을 유가족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이라면 제도적 강자인 군과 국가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화와 정보 인권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1. 정보화와 인권의 현실

인권의 개념은 인권 운동의 발달과 더불어 계속 변화발전해 왔다. 불과 백여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에게 투표권이 있느냐가 논쟁의 대상이었으며 가장 보편적인 인권을 정의했다는 1948년 UN 세계인권선언이 나오기까지 동서 진영이 자유권과 사회권의 범위에 대해 격렬히 논쟁했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금은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등의 자유권과,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그리고 국민이 국가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보장받고 교육·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모성보호, 환경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내용의 사회권이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십여년 동안에는 아동·동성애·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강조되어 왔다.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정보 인권'은 인권이 정보 사회에서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매우 소박한 주장이다. 하지만 네이스를 둘러싼 논쟁의 진동폭이 격렬한 것처럼 정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길이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다. 정보화가 인권 운동이 확보해 온 인권의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신체의 자유가 처한 상황을 보자. 국민을 체포·구속·압수·수색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영장주의 원칙이다. 하지만 이제 경찰은 국민을 수색할 때 굳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다. 카메라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2001년 미국 경찰은 얼굴인식기술을 사용해 미식축구 결승전을 보려고 모여든 수천 명의 관중 가운데 19명의 수배자를 아주 간단하게 검거했다. 경찰은 관중이 경기장에 입장할 때마다 얼굴을 촬영하여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데이터베이스와 신속하게 대조했고 경기가 끝났을 때 퇴장하는 관중 가운데 수배자를 손쉽게 골라내었다. 이 과정은 수배자를 검거한다는 명목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혐의자 신분으로 수색하고 조사하는 과정이었지만 "실례합니다.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따위의 양해조차 필요하지 않았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오는 8월부터 정부 게시판에 글을 쓸 때는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게 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글에 대해서는 글쓴이를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추적이란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신원